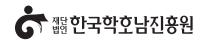
2020년 기초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10.21(수) 13:00~18:00 나주시청 본관 대회의실(2층)

13:00~13:30	등록		
1부 	사회 : 윤지향(나주시청)		
13:30~13:50	개 회 인사말 : 이종범(한국학호남진흥원장) 환영사 : 강인규(나주시장)		
13:50~14:40	기탁식(기념촬영) ·기관소개 및 기탁대상 자료 소개 ·나주지역 기록유산 자료 기탁식 (풍천임씨, 나주나씨, 나주쌍계정, 남평주조장)		
2부	사회 : 조미은(한국학호남진흥원)		
14:50~16:20	주제발표1 나주 풍천임씨 문중의 정착과 성장 선영란(나주시청) 주제발표2 나주 나주나씨 나덕헌 고문서의 가치와 의의 노인환(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발표3 나주 남평주조장 소장자료의 가치와 활용방안 고정서(신안군청)		
16:30~17:30	박효주(백호문학관) 박록담(한국전통주연구소) 윤여정(향토학연구소)		
17:30~18:00	폐회 및 만찬(기념촬영)		

※ 세부진행 및 일정 등은 변동될 수도 있음





[주제발표 1]	
나주 풍천임씨의 정착과 성장	7
선영란(나주시청)	
[주제발표 2]	
나주 나주나씨 나덕헌 고문서의 가치와 의의	31
노인환(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발표 3]	
나주 남평주조장 소장자료의 가치와 활용방안	65
고정서(신안군청)	

나주 풍천임씨의 정착과 성장

선영란(나주시청)

나주 풍천임씨의 정착과 성장

선영란*

- 목 차 -

- 1. 들어가는 글
- 2. 나주 풍천임씨의 정착과정
 - 1) 야산(夜山)의 정착
 - 2) 유주(酉疇)로 분가
- 3. 옛기록으로 본 나주 풍천임씨의 성장과 활동상
 - 1) <명고집(鳴皐集)> 간행과 명고의 정렬사 추배를 위한 노력
 - 2) 임필의 처 성씨가 남긴 분재기
 - 3) 임원의 <일신재유고> 간행과 <유주유고> 편집
 - 4) 임세기(任世耆)의 명정(命旌)과 효자각 건립
 - 5) 임세익의 명정과 <임효자유고> 간행
 - 6) 율봉사(栗峰祠)의 창건과 관련기록
 - 7) 임상욱-임태규-임성모 3대의 시권
 - 8) 일제강점기 임언재(任漹宰)·임학재(任鶴宰)의 유신9인계 (儒臣九人契) 활동

1. 들어가는 글

본 글은 필자의 나주혁신도시 조성 이전의 학술조사(2006.10~2007.2)1) 와 <금천면지>2)를 편찬하는 과정(2015.2~2017.7)의 자료조사를 근거로 작 성한다.

^{*}나주시청

¹⁾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문화유적지표조사』2007.

²⁾ 금천면지편찬위원회, 『금천면지(金川面誌)』, 2017.

풍천임씨는 남평현의 토성으로 야산(夜山)과 유주(酉疇)를 중심으로 나주시 금천면에서 집성촌을 이루었던 가문이다. 오늘날 나주의 풍천임씨는 고향을 잃은 채 객지를 떠도는 사람처럼 허허롭다. 그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던 야산과 유주를 혁신도시 조성에 내놓았고, 자손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문중 내 갈등의 단초가 되었고, 돈은어느 순간 허공을 떠돌더니 실체가 사라졌다. 족보를 편찬하고 제각을 중건하고, 사당을 복설하는 등 각종 문중사를 추진하였지만, 일가친척 간에친목이 강화되기보다는 갈등은 더 커져 보인다. 농경사회를 지나 도시화·산업화·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는 현실에서 한국의 성씨와 문중은 시대에 맡는역할과 책무에서 혼돈에 빠져있다.

오늘날 노년층은 '문화적 시나리오'를 상실한 세대이다. 어떻게 죽어야할 지도 혼란스럽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할지도 혼란스러운 세대이다. 그런 그들이 조상들의 묘자리 정비와 각종 기록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생각이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죽기 전에 마음이 바쁘다.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이 살던 집 안방 아랫목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줄 알았던 우리 부모세대는 더 이상 그런 자신의 생각은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아온 지난날의 문화적 경험 속에서 그의 머릿속은 백지장이다.

그들은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선조들의 각종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소각할까봐 걱정이다. 농경사회를 살면서 가족과 친족이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마을 일을 마을 주민들이 동계나 위친계를 조직하여 함께 운영하 던 시대의 산물은 더 이상 불필요한 유산이 되었다.

오늘 나주시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세대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의 일단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2. 나주 풍천임씨의 정착과정

풍천임씨가 나주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나주목사를 지낸 임윤신(任允臣, 1528~1587)과 관련이 깊다. 임윤신은 명종 14년(1559)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 정랑, 황해도사, 사헌부 장령, 집의, 홍문관 전한(典翰), 1572년 양주목사, 1583년 동래부사를 거쳐 1585년 강원감사를 지냈으며, 이후 바른말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 나주목사(1587.1.20.~1588.4.14)로 좌천되었다. 전임 김성일(金誠一)이 경현서원(景賢書院)을 세우다가 마치지못한 것을 완성하였으나 이후 임소에서 병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연고로아들인 명고 임전이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임진왜란에 김천일 의병장 막하에 종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남평현 야산에 정착한 풍천임씨 입향조는 임전의 아들 한림공 임기지(任 器之, 1586~1656)이다. 그는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와 상촌(象村) 신흠 (申欽)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16년(광해군 8) 생원·진사시에 모두 장원 을 하였고, 그 뒤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성균관 재학 중 인목대비(仁穆大 妃)의 폐출을 주장하는 소를 올렸다. 1618년(광해군 10) 증광문과에 병과 로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 검열이 되었으며, 검열 재직중 문한(文翰)의 자 질을 갖춘 인물로 이이첨(李爾瞻)의 추천을 받았다. 그 뒤 대교를 거쳐, 1620년(광해군 12) 세자시강원 사서(世子侍講院司書)가 되었으며, 이어 정 언·이조좌랑·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이이첨의 친아들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언관의 탄핵을 받아 멀리 유배되었 다. 1628년(인조 6) 유효립(柳孝立)의 옥사에 관련되어 경원(慶源)으로 다 시 유배되었다. 이듬해 양경홍(梁景鴻)사건에 연관되어 추국을 받은 뒤 영 암으로 유배되었으며, 1631년(인조 9) 홍산(鴻山)으로 옮겨졌다가 1633년 (인조 11) 석방되었다. 이후 본가인 경기도 남양주 덕소에서 소일하다가 인 조 말경에 가솔을 이끌고 큰아들 공(昇)의 처가인 진주정씨 초심당(草心堂) 현(晛)의 고장으로 남하하였다가 남평현 어천면 망악리 상야 베메산 기슭 에 거처를 정하게 되면서 풍천임씨 금천 입향조가 되었다. 그의 묘는 봉황 면 오림리 서당동 국사봉 아래에 있고, 율봉사(栗峰祠)에 배향되었다. 한림 공 임기지의 자손들은 서당동 송당(松堂)에 모여 시제를 지내고 있다.

1) 야산(夜山)의 정착

풍천임씨의 대표적인 집성촌인 야산과 유주는 1929년 간행된 <남평읍 지>에 따르면, 남평현의 명기(名基)로 나온다. 이중 야산은 혁신도시로 수용되기 전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의 배뫼산 아래에 자리한 상야.중야.하야마을을 일컫는다. 풍천임씨 금천 입향조인 17세 임기지(任器之)가 처음 야산(夜山)에 정착한 이래로 19세 임세익(任世益)이 중야에, 22세 임은(任溵)이하야에 정착하여 후손들이 퍼져나갔다.

중야에 정착한 임세익(任世益, 1646~1720)은 효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자는 익재(益哉)이고, 초당(草堂)은 자호(自號)이다. 한림(翰林) 임기지(器之)의 손자이고 필(弼)의 아들로 어천면 야산에서 태어났다. 효자 정문이 영조 36년(1760) 3월에 건립되어 동악리 마을 앞에 있었고, 율봉사에 배향되었으며, <임효자유고>1책이 전한다.

하야에 정착한 임은(任澱, 1725~?)은 임세익의 증손자이고 임창하(任昌夏, 1692~1741)의 둘째아들로 그의 묘는 광주 남구 대촌동 니장촌 뒤에 있다. 하야에 8대를 내려온 종가가 있었으나 종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종가가 빈 상태로 혁신도시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임은의 아들 임상욱(任相郁, 1762~1815), 손자 임태규(任泰奎, 1779~1847), 증손자 임성모(任性模, 1806~1845)와 관련된 시권(試券; 과거시험답안지)과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고강단자(考講單子) 상당량이 이 종가에 남아 전했다.

풍천임씨와 관련하여 동악리 일원에는 율봉사와 임세기효자각, 임세기가 세웠다는 독성재(獨醒齋), 임세익의 초당(草堂)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중 독성재와 초당은 세월이 흘러 사라졌고, 임세기 효자각은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봉황면 서당동으로 이건 신축되었고, 율봉사는 흥선대원군 때

훼철되었다가 1989년 역시 서당동에 이건 복설되어 향사되고 있으며, 선조들의 문집과 고문서는 남평에 세워진 '풍천임씨 운(運)자공 숭조관'에 보존되고 있다가 최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되었다.

2) 유주(酉疇)로 분가

한편, 유주는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유전마을의 옛지명이다. 풍천임씨 유전 입향조는 시조로부터 19세손인 세정(世鼎,1647~1723)이다. 임세정은 동악리 상야로 입향한 임기지의 둘째 손자이다. 임세정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효자로 자는 대수(大受)이다. 1677년(숙종 3) 증광시 생원 3등 17위로입격한 후, 수차례 대과 시험을 보았으나 급제하지는 못했던 인물이다.

유전에는 임원(任遠, 1688~1757)의 유주정사(酉疇精舍), 임언재(任漹宰, 1879~1951)의 서곡취헌(西谷翠軒), 임영재(任永宰, 1901~1982)의 월파정 (月坡亭)이 있었으며 많은 역사적 인물을 배출해냈다.

3. 옛기록으로 본 나주 풍천임씨의 성장과 활동상

금번 나주 금천면 풍천임씨 鳴皐(任錪) 후손들이 남평의 숭조관에 보관 중이던 고문헌을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하였다. 이 문서는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후손 임창빈의 노력이 있었다. 총 624점으로 이중 고문서가 309점, 고서가 315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문서 가운데 나주지역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가문의 문집류(명고집, 일신재유고, 유주유고, 임효자유고)와 율봉사와 송당(풍천임씨 한림공 제실)의 운영문서이다. 그리고 임상욱-임태규-임성모 3대에 걸쳐 남아있는 시권류와 예조입안, 입향조 임기지의 며느리 성씨가 남긴 분재기 등의 고문서류이다.

본 장은 이들 옛기록을 근거로 풍천임씨의 활동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명고집(鳴皐集)> 간행과 명고의 정렬사 추배를 위한 노력

명고집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임전이 저술한 시문집이다. 부친임윤신이 나주목사로 재임한 것을 인연으로 경기도 남양주에서 나주를 내왕했고, 이때 김천일, 송제민, 임환, 양산숙 등 당시 나주의 유현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훗날 임진왜란을 당하여 김천일 의병장의 막하에 들어가 책사로서 오가는 전문을 모두 작성했던 인물이다.

그의 저술은 매우 많았으나 병화에 산일되고, 석주(石洲) 권필(權)韓, 1569~1612)의 시화(詩話)사건으로 인해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한 부인 윤씨가 원고를 불태워서 약간의 시고와 <임진일기> 1책만 남아있었다. 농암 김창협이 저자의 시고를 산정하였으나 간행되지 못하였고, 외현손 박권(朴權, 1658~1715)이 가장시고를 바탕으로 저자의 유문을 수집 편차하여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1704년에 대구에서 8권1책의 목판으로 문집을 초간하였다. 그후 1726년에 8권 2책의 목판으로 문집을 보각하였고, 다시 7세손임성고(任聖皐)가 영변부사로 재임 중 초간본에 유문 등을 추가하여 1833년(순조 33)에 10권2책의 목판으로 중간하였다.

이 중간본 권9에 호남 유생들이 명고 임전을 나주 정렬사에 추배하기를 청하는 상소초(上疏草)가 들어있다. 그리고 문중에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서(上書)가 훼손이 심한 상태로 남아있다.

2) 임필의 처 성씨가 남긴 분재기

이 분재기는 임기지의 아들 통덕랑 임필(任弼, 1619~1672)이 죽은 후 31년 후인 숙종 39년(1713) 2월 초3일에 그의 부인인 성씨(成氏)가 4남 1 녀에게 재산을 분배한 내역을 적은 문서이다. 장자 임세익, 2남 임세직, 3 남 임세룡, 4남 임세기와 외동딸 모두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가문이었음을 말해준다.

3) 임원의 <일신재유고> 간행과 <유주유고> 편집

일신재유고는 조선 후기의 효자·유학자인 임세복(任世復, 1655~1703)의 유고집으로 4권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세복은 효성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졌으며, 명재 윤증의 문인이 되었으며, 서계 박세당과 구천 이세필 등에게 학문의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다.

이 유고본의 초간본이 완료된 것은 1711년(숙종 37)으로 그의 아들인 임원(任遠, 1688~1757)이 주도하였다. 표제는 <일신재유고>이나 초기에는 일기 등을 모아 <일신재일록>으로 발행하였다. 1963년 8세손 임영재(任永宰)가 중간본을 냈다.

《유주유고》는 임원의 유고집이다. 임원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치숙(致叔)이고, 호는 시암(時菴)·유주(酉疇)이다. 조부는 임식(任寔)이고, 아버지는 효자로 사헌부 지평에 증직된 임세복이며, 어머니는 나주나씨 장령(掌令) 훤(楦)의 따님이다. 겨우 16세에 아버지상을 당하여 애절하게 우는소리에 모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가난한 생활에도 염원이 있으니 일찍이 뜻을 굳혀 엄훈을 받았다. 상례를 마친 뒤 23세가 되던 숙종 37년(1711)에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당대의 큰 학자 명재(明齋) 윤증(尹拯)을 노성(논산시 노성면)으로 찾아가 아버지의 《일신재일기》를 보이고 그끝에 글을 받아왔으며, 이때 "맏아들은 훌륭한 자질이 있으면서 학문을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이 일이 바로 어버이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고 선양하여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니, 맏아들은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그는 명재를 여러 번 찾아가 질문을 하였다. 24세가 되었을 때에도 서신으로 《대학(大學)》에 대한 의문점을 질정하였는데, 《명재유고(明齋遺稿)》 권26 서(書)에 임진년(1712) 9월 7일 〈임원(任遠)에게 답함〉이라는 글에, "《대학혹문(大學或問)》은 대충 읽어서는 안 되네. 백 번을 읽어야비로소 효과가 있으니, 처음에는 의문이 있더라도 뒤에 가면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이네. 여기에서 득력(得力)하면 다른 책들은 읽기가 어렵지 않으

니 더욱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소학(小學)》의 도를 행하려는 학자가적은데,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학문에 들어가는 문을 얻었다고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범범하게 읽고 체득하여 행하지 못하는 병통에대해서 말하면, 이미 그것이 병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곧 고치는 것이 바로 약이지 무슨 별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스스로 더욱 노력하는 데에 달려있을 뿐이네."라고 답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 위의 글에서 그가 젊은 날공부할 때 《대학》과 《소학》을 어떻게 읽었으며 학문하는 자세와 열정이 어떠하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는 명재의 제자로 자처하며 여러 번 찾아뵙고 학문하는 방도를 묻고, 사후에도 스승의 예를 다하였다.

경종 3년(1723) 식년시(式年試) 생원시(生員試)에 입격하고, 영조 11년 (1735) 증광시(增廣試) 문과 병과 26인으로 급제하여 가주서(假注書)로 출사하였다. 이후 기사관(記事官), 예조정랑(禮曹正郞)을 거처 영조 17년 (1741)에 광양현감으로 부임한 뒤 고을에 학사(學舍)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여 죽사(竹寺)라는 절을 재사(齋舍)로 삼고 속공전답(屬公田畓: 죄인으로부터 몰수한 토지)을 지급하여 경제기반으로 삼는 등 전에 병화로 불타고 없어진 흥학재(興學齋)를 재건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이듬해에 이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25년에 편찬된 《광양군지》에 "절목 1책이 남아 있어 전후 내력을 전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어 그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의와 자세를 짐작할 수가 있다.

영조 23년(1747) 사헌부 감찰, 사직서 령(社稷署令)을 지내고, 성균관 사예로 승진하였으며, 영조 27년(1751)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가 사간원 정언을 거쳐 다음해에 다시 지평이 되었다. 이후 한직인 부사직(副司直)에 있다가 벼슬살이를 마치고 고향인 금천 유전에 내려와 지냈다. 그의 작은 터전인 서쪽 밭에다가 정자를 짓고 유주정사(酉疇精舍)라고 이름을 짓고 풍류를 즐기며 만년을 보내다가 영조 33년(1757)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고(遺稿)가 약간 전하고, 사후 효자로서 천거되어 이조판서에 증

직되었으며, 금천면 동악리 야산의 율봉사(栗峰祠)와 봉황면 철천리 용강사 (龍岡祠)에 배향되었다.

4) 임세기(任世耆)의 명정(命旌)과 효자각 건립

임세기의 효자각은 본래 금천면 동악리 중야마을 입구에 있었다. 이 효자각은 효자 임세기(任世書, 1666~1718)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을 하고 있었다. 효자각의 내부에는 <孝子學生任世書之門>이라 새겨진 편액이 걸려 있었고, 작은 글씨로 경진년(1760년)에 이 효자 정려가 하사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동악리 중야마을은 '야산(夜山)'으로 통칭되던 풍천임씨의 오랜 세거지였다. 이 효자각은 풍천임씨가 누대에 걸쳐 이 땅에 살았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문화재였다. 그러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효자각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다. 지금은 풍천임씨 한림공 임기지(任器之)의 묘소와제실 송당재(松堂齋)가 있는 봉황면 오림리 서당동으로 이전 신축되었고,정려 편액만이 그곳으로 옮겨져 게재되었다.

임세기는 《여지도서》와 《남평읍지》에 따르면, 조선 중기 문인·효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본관은 풍천, 자는 성노(聖老)이고 호는 독성재(獨醒齋)이다. 한림(翰林) 기지(器之)의 손자이고, 부친 임필(任弼)과 어머니 창녕성씨호연(浩然)의 따님 사이에서 막내아들로 금천면 동악리 상야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여호(黎湖) 박필주(朴弼周)는 독성재의 묘갈에, "7세의 어린 아이로 능히 3년간을 소식(素食)하였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바 있으며, 과도한 집상(執喪)과 애통으로 병이 생기어 졸하였으니 그가 평소 수식(修飾)을 빌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니, 그 천성에서 받은 바가 이와 같으니 효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七歲兒能素食三年者 令人感歎流涕. 而君則執喪之過 致哀而止 可見其爲不假修餙 受於所性 若是而不謂之孝乎)."3)라고 설파한 바가 있다.

³⁾ 박필주. 〈학생임군묘갈명(學生任君墓碣銘)〉. 《여호집(黎湖集)》권24.

그는 숙종 42년(1716) 2월에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는 그도 노쇠기에 접어든 51세 나이에 형제간에 한 여막에서 시묘살이를 하면서 죽만 먹다가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백씨(伯氏)가 권유하여 본가로 가도록 하였으나 결국 풍비(風痹)을 만나 3년 상을 겨우 마치고 53세로 별세하였다. 효자 정문이 내렸고 율봉사에 배향되었다.

5) 임세익의 명정(命旌)과 <임효자유고> 간행

임세익(任世益, 1646~1720)은 효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자는 익재 (益哉)이고, 초당(草堂)은 자호(自號)이다. 한림(翰林) 기지(器之)의 손자이고 필(弼)의 아들로 어천면 야산(금천면 동악리)에서 태어났다. 중후한 자질과 성품으로 효행이 지극하여 조석으로 재를 넘어 문안을 드렸으며, 친상(親喪)을 당하자 여묘(廬墓)하고 3년상이 끝난 뒤 자손들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세익은 다음과 같은 시(詩)를, "3년을 다해도 정은 다함이 없고 (有盡情無盡), 노승과 반려가 되어 다시 책을 읽는다(爲伴老僧更看書)" 짓고, 일생을 묘소 아래에서 지냈다.

공의 효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조정에서 정려가 내려졌는데, 예조에서 올린 효자 복호 별단(孝子復戶別單)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성록(日省錄)》 정조 20년 병진(1796, 가경 1) 12월 29일(경자)에, "남평(南平)의 고 사인임세익(任世益)이다. 어렸을 때부터 성심으로 효도하는 것이 남달랐다. 아비의 상을 당하여 늘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감히 마음대로 행동하지않고 아침저녁으로 절규한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어미가병에 걸려 오랫동안 낫지 않아 직접 보살핀 것이 거의 30년으로, 나이가 80에 가까운데도 한결같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효자 정려가 어천면 야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1938년에 간행된《조선환여승람》에 복호 정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한편 그의 유고집인 임효자유고(任孝子遺稿)는 총 2권1책으로 필사본이

다. 권1은 시 80수, 권2는 제문(祭文), 서(書), 유훈(遺訓)으로 구성되었다. 사헌부지평 홍봉주(洪鳳周)가 1790년 7월에 지은 「題任孝子遺稿後書」가 수록되어 있고, 발문은 1787년 저자 임세익의 증손자인 임은(任澱)의 글이 고, 뒤에 이어지는 글은 임은이 송흠에게 부탁한 추서(追書)로 1790년에 작성되었다.

6) 율봉사(栗峰祠)의 창건과 관련기록

율봉사는 남평현의 서쪽 10리 지점인 금천면 야산(夜山)에 세워진 사우 이다. 배향 인물로는 명고 임전(任錪)을 비롯한 신곡(薪谷) 임기지(任器之), 초당(草堂) 임세익(任世益), 일신재(日新齋) 임세복(任世復), 독성재(獨醒齋) 임세기(任世耆), 시암(時菴) 임원(任遠), 초봉(草峰) 김정구(金鼎九) 등 7인 선유(先儒)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던 사우였다.

중헌(重軒) 유정복(尹丁鍑. 1919~2002)이 1995년에 찬한 <율봉사묘정비 (栗峰祠廟庭碑)>에 의하면, "영조 4년(1728)에 지방의 사림과 후손들의 공 의로 명고선생을 비롯한 7인 선유의 유덕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율봉사 상량문이나 기문이 남아있지 않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창건연대를 1728(戊申)년이 아니라 1788년으로 봐야 맞지 않 나 생각된다. 오늘날 남아 전하는 율봉사 운영문서 대부분이 1791년 이후 에 성책되고 있고 창건연대를 그 이전으로 소급해 볼만한 근거가 미약한 상태이다.

율봉사는 창건 당시 명고 임전을 주벽으로 초당 임세익, 독성재 임세기 등 3인 만을 배향했던 사우였고 원생(院生) 5인, 재직(齋直) 2인, 모군(募 軍) 5인의 규모를 지닌 사우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1791년에 성책된《심원 록(尋院錄)》에 3위의 제향을 담당하는 제관 명단만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남은 네 분의 추배는 1826년(순조 26)에 있었던 율봉사의 중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원록(尋院錄)》에 따르면, 1826년(순조 26) 1월 26일에 봉안된 위패를 이안(移安)하고, 중수가 완료된 4월 9일에 위패를

환안(還安)하고 있다. 아마도 중수가 이루어지고 난 뒤 임기지, 임세복, 임원, 김정구 등 4인을 추배하여 모두 7인을 배향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한다. 당시 성조유사(成造有司)는 명고의 7대손 임상권(任相權, 1789~?), 8대손 임태형(任泰亨, 1776~?)·임태규(任泰奎, 1779~1847)·임태복(任泰福, 1789~?)·임태의(任泰義, 1791~?)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율봉사가 중수된 이후 41년이 지나는 동안 사우를 찾은 인사들이 지알 (祗謁)한 자필 기록이 남아 있다. 1867년(고종 4) 정묘(丁卯) 8월 15일에 풍산인 홍우문(洪祐文)이 마지막으로 지알했던 것으로 기록은 말해준다. 그리고 다음해인 고종 무진(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사우가 훼철되었다.

율봉사는 훼철된 이후 복설되지 못하다가 전국의 풍천임씨 종친들의 염원으로 1989년에 나주시 봉황면 덕림리 서당동에 새 터를 잡아 복설을 시작하였다. 다음해 사우 3칸을 높게 세우고 새 사당에 옛 이름의 현판을 게재하였다. 복설 후 7위 가운데 임기지와 김정구는 제외되고, 1충(忠) 4효(孝)인 5위만을 봉안하고 있다.

오늘날 율봉사 전면 우측에 1995년 유두절(음력 6월 15일)에 파평 윤정복이 찬한 묘정비가 세워져 있어 사우가 건립된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1) 율봉사의 역할

율봉사는 창건 이래 배향된 선현의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율봉사가 선현 제향의 공간만이 아니라 강학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음을 율봉사 운영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강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율봉사우유생안(栗峰祠字儒生案)》(己亥 4월, 1839년)에 따르면, 금마산면 신촌에사는 박문기(朴文基) 외 박수언(朴守彦), 김영민(金靈敏), 양일구(梁日九), 이만춘(李萬春) 등 5인의 유생 성명과 집강(執綱)으로 홍모(洪某) 정모(鄭某)의 수결(手決)이 있다. 그리고 정미(丁未, 1847)년 정월에 김종달(金宗

達), 김영민(金靈敏), 정맹철(鄭孟哲), 이만봉(李萬奉) 등 5인의 유생 성명과 집강(執綱) 서모(徐某) 최모(崔某)의 수결이 있다.

이처럼 율봉사의 유생 정원수는 1839년과 1847년에 각각 5명씩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정원이 5명 내외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율봉사 관련문서

① 율봉사 홀기(笏記)

율봉사에는 두 첩의 홀기가 있다. 하나는 표지가 밤색으로 '笏記'라 쓰여 있고, 다른 것은 흰 한지위에 '栗峰祠 笏記'라고 쓰여 있다. 이 홀기는 율봉사의 향사(享祀)를 지낼 때 사용된 제례 절차를 기록한 문서이다.

가. 홀기(笏記)

이 홀기는 짙은 밤색 표지에 큰 글씨로 '笏記'라고 쓰여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성책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표지와 지질로 보아 세월의 흔적이 묻 어난다. 그러나 이 홀기의 제례순서가 7위 중에 5위만을 제향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1989년 복설 당시에 성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홀기 표지를 넘기면 성목례(省牲禮: 제사에 쓸 희생(犧牲)을 살피는 예)를 시작으로 향사가 진행되며, 명고·초당·일신재·독성재·시암선생 등 5위에 대한 향사가 진행되는 의식 순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진설도(陳設圖)와 독성재선생 축문(祝文) 서식이 기록되어 있다.

나. 홀기(笏記)

홀기 표제는 '栗峰祠 笏記'이다. 이 홀기 역시 누가 언제 어디서 성책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표지와 지질로 보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없다.

이 홀기는 한 면에 칸을 다섯줄로 그린 다음 그 안에 세로로 의식 내용을 기록한 뒤 접어서 하나의 첩으로 만들었다. 앞의 홀기와 마찬가지로 5

위의 의식 순서가 기록되어 있으며 뒤에 진설도(陳設圖)와 명고선생 축문 (祝文) 서식이 들어있다.

② 율봉사 유생안(栗峰祠儒生案)

율봉사에는 유생안으로 2책이 전하고 있다. 1책은 표제가 '栗峰祠宇儒生案 己亥 四月 日'이다. 그리고 다른 1책은 '栗峰祠宇儒生案 丁未 正月 日'이다. 이 두 책은 율봉사가 중수된 1826년(순조 26) 이후인 1839년(기해) 년 4월과 1847(정미)년 정월에 성책된 것이다. 이들 유생안에 각 5명의 유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율봉사의 유생 정원수는 5명 내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 기해 유생안(己亥儒生案)

표제가 '栗峰祠宇儒生案 己亥 四月 日'이다. 기해(己亥, 1839)년 4월 모일에 성책된 이 유생안에 등재된 유생으로 금마산면 신촌에 사는 박문기(朴文基), 박수언(朴守彦), 김영민(金靈敏), 양일구(梁日九), 이만춘(李萬春,萬奉) 등 5인이고 집강(執綱)으로 홍모(洪某)·정모(鄭某)의 수결(手決)이 나타나 있다. 어천(魚川) 또는 금마산(金馬山)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금의 금천면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나. 정미 유생안(丁未儒生案)

표제가 '栗峰祠宇儒生案 丁未 正月 日'으로 정미(丁未, 1847)년 정월에 성책된 유생안이다. 등재된 유생으로 금마산면 신촌에 사는 박문기(朴文基), 어천 벽류의 김종달(金宗達), 등개 남당의 김영민(金靈敏), 어천 고한의 정맹철(鄭孟哲), 어천 신촌의 이만봉(李萬奉) 등 5인의 성명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집강 서모(徐某)·최모(崔某)의 수결과 지방관의 수결이 들어있다.

③ 심원록(尋院錄)

심원록이란 율봉사를 방문한 자들의 명부를 기록한 문서이다. 율봉사에는 2책의 심원록이 전하고 있다. 1책은 표제가 '尋院錄 辛亥'이고, 다른 1 책은'尋院錄'이라고만 쓰여 있다.

가. 신해 심원록(辛亥尋院錄)

표제는 '尋院錄 辛亥'이다. 율봉사가 1788년(무신)에 창건되었다고 본다면, 그 3년 뒤인 1791년(신해)에 처음 성책된 문서이다. 표지를 넘기면 첨배록(瞻拜錄)4)이라 쓰고 금성의 후학 오양원(吳養源)과 오석원(吳碩源)이신해(1791년) 정월 20일 봉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 장에는 '辛亥二月 中丁 祭享執事榜'이란 기록이 있고 헌관(獻官)에 오준원(吳濬源), 정명음(鄭明欽), 임창조(任昌祚)의 이름이 보이며, '鳴皐位諸執事, 草堂位諸執事, 獨醒齋位諸執事'라고 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율봉사가 창건 초기에는 명고, 초당, 독성재 등 3인의 신위 만을 봉안하고 향사했음을 알수 있다. 다시 한 장을 넘기면, 독성재 임세기의 손자인 임명창(任命昌, 1710~1792)이 죽기 한 해 전인 삼월 초삼일에 지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심원록에는 〈崇禎三辛亥二月二十二日末丁禮成〉(규격 29.5×35.8cm)과 〈栗峰院案〉(규격 27.8×37.2cm)의 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나. 심원록(尋院錄)

표제는 '尋院錄'으로 앞의 1791년에 성책된 심원록이 오랜 세월로 인해 달아 훼손될 처지에 놓이자 다시 성책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지를 넘기면 '후학 금성 오준원(吳濬源) 지알 나주'라고 하였으며, 5행에 '풍산후인 홍봉 주 지알'을 포함하여 65명의 첨배(瞻拜)한 자들의 성명이 한 사람의 글씨

⁴⁾ 첨배록(瞻拜錄) : 선조 혹은 선현의 사당에 우러러 절한 사람의 성명을 적는 기록, 여기서는 율 봉사에 봉심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해놓은 방명록을 말한다.

로 기록되어 있다. 그 뒤로는 첨배한 자들의 성명이 자필로 기록되고 있는데, 1867년(고종 4) 정묘(丁卯) 8월 15일에 풍산인 홍우문(洪祐文)이 마지막으로 지알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해인 고종 무진년(186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사우가 훼철된 이후의 <종안서문(宗案序文)>과 <명안(名案)>이 실려 있다. <종안서문>은 계유년(1873) 6월 7일에 임영모(任永模, 1804~?)가 지은 것이며, <명안>에는 풍천임씨 각 파별로 율봉사에 출입하는 후손들의 명단을 적고 있는데, 時庵正言公派(시암정언공파), 草堂公派(초당공파), 獨醒齋公派(독성재공파), 季派(계파), 進士公派(진사공파) 諸宗 別名(제종 열명)의 순으로 이름과 태어난 해와 자(字)가 기술되어 있다.

④ 율봉사 모군안(栗峰祠募軍案)

율봉사의 모군안은 두 장이 전하고 있다. 모군(募軍)이란 조선시대 역사 (役事)가 있을 때마다 품삯을 치르는 조건으로 인부를 고용하던 제도였다. 즉 율봉사에서 고용한 인부를 모군(募軍)이라 불렀다. 고용된 모군은 종속된 노비나 종이 아니고 양민이나 중인·서인들로 날품팔이하는 잡역부이지만 관아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고용할 수가 있었다.

가. 기해 율봉사 모군안(己亥栗峰祠募軍案)

오른쪽에 세로로 '己亥 四月 日'라 작은 글씨로 쓰고, 그 왼쪽에 큰 글씨로 '栗峰祠字募軍案'이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기해년은 1839년을 말하며 그해 4월에 이 모군안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중요부분 5곳에 붉은 관인(官印)이 찍혀있다.

魯抱宗(노사종)

陳雙重(진쌍중) 移居(이거) 代(대) 金富貴(김부귀) 梁禹九(양우구) 故代(고대) 金壽貴(김수귀) 金古甫(김고보) 改名(개명) 北一(북일) 李詢同(이순동) 故代(고대) 鄭五龍(정오룡) 際(제)

己亥 四月 日 執綱 洪 一心

鄭 一心

나. 정미 율봉사 모군안(丁未栗峰祠宇募軍案)

낱장 3매이며 종이 실로 두 곳을 꿰매어 성책하였다. 표지 오른쪽에 세로로 '丁未 正月 日'이라 작은 글씨로 쓰고, 그 왼쪽에 '栗峰祠宇募軍案'이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다. 이 모군안은 1847년 정월에 작성된 문서이다. 표지를 넘기면 다음 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끝부분에 관의 수결이 들어있다.

魯抱宗(노사종) 居 魚川 新村(어천면 신촌에 거주함)

金富貴(김부귀) 居 東村 元績(동촌 원적에 거주함)

金壽貴(김수귀) 居 東村 元績(동촌 원적에 거주함)

金北一(김북일) 居 魚川 新村(어천면 신촌에 거주함)

鄭五龍(정오룡) 居 魚川 新村(어천면 신촌에 거주함)

際(제)

丁未 正月 日 執綱 徐 一心

崔 一心

⑤ 율봉사 균역안(栗峰祠宇除野山新村面中烟役對當秩)

낱장 3매이며 종이 실로 두 곳을 꿰매어 성책해 놓았다. 표지 오른쪽에 '丁未 正月'이라 쓰고, 왼쪽에는 '栗峰祠宇除野山新村面中烟役5)對當秩'이라 적혀 있다. 1847년(정미) 정월에 성책되었던 〈율봉사우모군안〉과 함께이 문서도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지를 넘기면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⁵⁾ 연역(烟役): 조선시대 민가 호(戶)마다에 부과하는 잡역. 매호에 부과되는 요역부담을 연호잡역 (烟戶雜役) 혹은 연역(煙役)이라 불렀다.

對當秩

羅家税

風憲朔紙

面中无亾畨錢

折半對當秩

馬兵錢

旗牌官錢

陞戶錢

此外烟役一倂許税印

앞에서 열거한 대당질(對當秩)부터 승호전(陞戶錢) 외의 잡역과 세금의 징수를 모두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즉, 조선시대 서원사우의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 해당지역의 민가에 부과하는 잡역이나 시장세 등을 징수할 수 있 는 권리를 주었는데, 남평현감이 율봉사에도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해 준 무서이다.

7) 임상욱-임태규-임성모 3대의 시권

풍천임씨의 기탁 고문서 가운데 29점의 시권이 있다. 이중 상당량이 임 상욱-임태규-임성모 3대와 관련된 것이다.

임태규(任泰奎, 1779~1847)는 집안에'진사할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이다. 시권은 35세 되던 해인 순조 13년(1813) 계유 증광시에 생원 3등 7위 (37/100)에 입격하였다고 확인된다. 그리고 그해 10월 11일에 전국의 유생 들과 함께 상소한 일이 《승정원일기》에 나타나고 있다.

임성모(任性模, 1806~1845)는 타고난 성품이 효우하고 일찍부터 학문이 심오하였던 인물이다. 본래 동생 임태경의 둘째아들인데, 임태규가 그를 양자로 들이고자 예조에 도광 17년(1837) 2월에 입안을 제출한 사실이 남아 있는 고문서로 확인된다.

8) 일제강점기 임언재(任漹室) 임학재(任鶴室)의 유신9인계(儒臣九人契) 활동

임언재(1879~1951)는 자는 자윤(子潤)이고 호는 서곡(西谷)으로 석전리유전(酉田) 사람이다. 사헌 송갑기의 제자이며 현와 고광선의 문인이다. 특히 송갑기의 문집인 《사헌유고(思軒遺稿)》에 두 사람이 왕래하며 주고받은시문이 적지 않게 실려 있다. 그는 타고난 모습이 뛰어나게 총명하여 의리를 분석함이 대나무 마디를 쪼개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정도홍(鄭燾洪)·홍광희(洪光憙)·임학재(任鶴宰)·홍찬희(洪纘憙)·한기설(韓基髙)·안철로(安哲魯)·정도희(鄭燾希)·홍기면(洪起冕) 등과 함께 '유신9인계(儒臣九人契)'를 조직하여 나주지역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다. 이후 1910년 경에 고향 마을 언덕에 정자를 짓고 '西谷翠軒(서곡취헌)'6)이라 명명하고 이곳에서 기울어가는조국의 현실을 한탄하며 학문에 침잠하는 한편 인근의 유림들과 벗하며 풍속을 진작하는 등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남평향교의 존묘(尊廟)를 받들고강기(綱紀)를 도와서 세우는 영수(領袖)가 되었다. 1922년과 1927년에는남평향교의 직원(直員)을 지냈으며,향당의 사림들이 추중(推重)하였다.

임학재(1881~1962)는 자가 자화(子和)이고 호는 후고(後皐)이다. 임언재와 함께 송갑기의 문인으로 유신9인계(儒臣九人契)를 조직하여 나주지역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다. 1907년 군대해산 등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1908년 의병을 일으킬 것을 논의한 후 1909년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였다. 1953년에 송갑기의 문집인 《사헌유고(思軒遺稿)》의 발문(跋文)과 《남평향교지》 간행소의 도유사가 되었으며, 1955년과 1956년 발행된 《남평향교지》와 《영평호보》의 서문(序文)을 짓기도 하였다. 1960년 남평향교 재장(齋長)을 지냈다.

⁶⁾ 사헌(思軒) 송갑기(宋甲基, 1854~1920)의 문집에 〈서곡취헌기(西谷翠軒記)〉가 들어있고, 임 언재의 호가 서곡(西谷)이므로 여기서는 서곡취헌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난와(難窩) 오계수(吳繼洙, 1843~1915)의 문집인《난와유고(難窩遺稿》)권7 기(記)편에, 〈유곡취헌후기(西谷醉軒後記)〉가 들어있다. 그런 이유인지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가 간행한 《누정제영(樓亭題詠)》 (368쪽)에는 유곡취헌(西谷醉軒)으로 표기되어 있다.

мемо

мемо

мемо

나주 나주나씨 나덕헌 고문서의 가치와 의의

노인환(한국학중앙연구원)

나주 나주나씨 나덕헌 고문서의 가치와 의의

노인환*

- 목 차 -

- 1. 머리말
- 2. 임명문서와 관직 활동
- 3. 『忠烈公三道統禦營錄』과 관직 활동
 - 1) 三道統禦使의 임명과 부임
 - 2) 統禦營 수군의 재건
 - 3) 鐵串鎭의 설치
 - 4) 淸 勅使의 支待
- 4. 追贈教旨·諡號教旨와 顯揚
-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에 나주에 세거하였던 나주나씨의 대표적인 인물인 羅德憲(1573~1640)은 1573년(선조 6) 6월에 羅士忱과 光州鄭氏 사이에서 태어나서 선조~인조 연간에 무신으로 활동하였다. 선조 연간 과거에 급제한 후에 광해군과 인조 연간 지방 수령과 군사지휘관을 역임하였고 중국에 사신으로 몇 차례 다녀왔으며 최종 관직은 삼도통어사를 지냈다. 이러한 나덕헌 관련 고문서는 나주 나주나씨 충렬공(나덕헌) 후손가에 대대로 전해지다가 2019년 10월에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자료 조사, 촬영, 목록 정리, 해제를 수행하였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조사·정리한 나주 나주나씨 나덕헌 고문서(이하 나덕헌 고문서)는 13종 36점으로 나덕헌과 아들 羅守素, 손자 羅禕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고문서이다. 이러한 나덕헌 고문서는 기존에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등의 사료와 나덕헌의 개인 문집인『壯巖遺集』에 수록되지 않은 나덕헌의 관직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忠烈公三道統禦營錄』은 삼도통어사 시절 나덕헌의 관직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나주 나주나씨 나덕헌 고문서에 대한 가치와 자료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나주 나주나씨 나덕헌 고문서의 전체 현황

유형분류	문서명	점수	관련 인물 및 내용
	教書	1	삼도통어사 나덕헌 使命訓諭敎書
	諭書	2	함경북도방어사, 삼도통어사 나덕헌 密符諭書
	紅牌	1	나덕헌 무과 급제 紅牌
数 今 絎	告身	18	나덕헌, 羅守素 告身
教令類 	追贈教旨	3	나덕헌, 나덕헌 妻 全義李氏 贈職
	諡號教旨	2	나덕헌 贈諡
	有旨	1	함경북도방어사 나덕헌에게 광해군 명령 전달
	賜給	1	秋信使 나덕헌에게 물품 賜給
證憑類	立案	1	나덕헌 묘소의 四山 경계 立案과 墓直의 煙 戶雜役 면제
	試券	2	羅禕 生員試 試券
置簿記錄類	忠烈公 三道統禦營錄	1	삼도통어사 시절 啓本·狀啓·關·牒呈 등을 수 록한 謄錄
詩文類	御製詩	2	正祖가 나덕헌 후손에게 내린 御製詩와 皮封
書畫類	拓本	1	나덕헌 旌閭 拓本
합계		36	

기존에 나덕헌에 대해서는 한문학·역사학 분야에서 선행 연구가 이루어 졌다. 한문학 분야에서는 洪敬謨가 저술한 『羅德憲傳』을 분석한 연구가 있 다.1) 『나덕헌전』을 통해 나덕헌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나덕헌전』의 성립

¹⁾ 이군선,「洪敬謨『羅德憲傳』分析」,『동방한문학』45, 동방한문학회. 2010.

과정과 구성, 인물에 대한 형상화 수법 등을 연구하였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16~17세기 羅州羅氏 一門의 활동과 의미를 연구한 성과가 있다.²⁾ 나사 침과 나덕명 형제의 생애와 활동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덕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1636년(인조 14) 나덕헌이 중국 심양에 사신으로 갔을때에 기록한 使行日記인『北行日記』의 역주가 출간되었다.³⁾

또한 조선시대 가문에 전래된 고문서를 통해 한 인물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한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관직 임명장인 告身을 통해 한 개인의 관직생활을 연구하거나,4)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고문서를 통해 가문의 역사나 인물의 생애를 연구하였다.5)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나덕헌의 관직 활동과 후대에 나덕헌의 업적을 顯揚하는 과정을 나덕헌 고문서의 가치와 의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임명문서를 통해 과거 합격과 지방의 수령·군사지휘관 및 중국 사신 시절에 관직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충렬공삼도통어영록』을 통해서 나덕헌이 삼도통어사 시절에 수행한 관직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추증교지와 시호교지를 통해 나덕헌의 사후에 追贈하고 諡號를 내리며 旌閭를 세워서 나덕헌을 현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덕헌의 관직 활동과 현양 과정을 규명하여 나덕헌 고문서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살펴보고 아울러 나덕헌 고문서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기성,「『羅德憲傳』硏究」,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²⁾ 김만호, 「16~17세기 羅州羅氏 一門의 활동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 74, 호남사학회, 2019.

³⁾ 신해진 역, 『북행일기』, 보고사, 2020.

⁴⁾ 김학수, 「한범석(韓範錫:1672~1743) 교지(敎旨)의 역사적 가치」, 『남명학연구』43, 경상대학교 경남문 화연구원, 2014. 임선빈, 「16세기 杏堂 尹復의 관직생활 -告身 활용을 위한 제언-」, 『역사민속학』54, 한국역사

임선민, '16세기 否定 尹復의 관식생활 -告身 활용을 위한 제언-」, "역사민족학』 54, 한국역시 민속학회, 2018.

⁵⁾ 박성호, 「고문서로 복원한 雲巖 金緣의 생애」, 『국학연구』37, 한국국학진흥원, 2018. 조미은, 「정조대 무신 丁好南의 가계와 관직활동 -영성정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6, 한국고문서학회, 2020.

2. 임명문서와 관직 활동

나덕헌은 1603년(선조 36)에 1월 8일에 거행된 庭試 무과에서 31세의 나이로 급제하였다.⁶⁾ 당시 합격자를 수록한 『癸卯春別試榜』에 따르면 甲 科 1인, 乙科 33인, 丙科 1,595인으로 총 1,629명을 선발하였다.⁷⁾ 필사본 으로 전해지는 『계묘춘별시방』에는 209명의 합격자만 기록되어 나덕헌은 누락되었지만, 나덕헌의 홍패를 통해 과거에 합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다. 나덕헌의 홍패에 따르면 무과에 응시할 때에 나덕헌은 校生이었으며 과거에 합격한 등수는 병과 제987인이었다.

무과에 합격한 해에 나덕헌은 李德馨의 추천을 통해 宣傳官에 임명되어 선조의 명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605년(선조 38) 4월에 선전관 나덕헌은 선조의 명령을 담은 有旨를 咸興府에서 순찰사 徐渻과 절도사 金宗得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함경도의 潼關鎭(현 함경북도 종성군)이 忽 賊에 의해 함락된 상황을 書啓를 올려 선조에게 보고하는 선전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8)

광해군 연간에 나덕헌 관련 기사는 『광해군일기』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고신·유서·유지를 통해 나덕헌의 관직 활동을 일부 살펴볼 수 있다. 1609년 (광해군 1) 7월에 나덕헌은 부안현감에 임명되어 지방 수령으로 임무를 수 행하였다. 1612년(광해군 4) 10월에 忠武衛 副司直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義州府判官에 임명되어 의주부윤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의 1619년 (광해군 11) 1월 龍驤衛 副司果에 임명되어 五衛에서 군직을 담당하였다.

^{6)『}壯巖遺集』卷之七 年譜: 三十一年癸卯, 公三十一歲. 公登武科. 漢陰李文翼公, 薦公才諝, 拜宣傳官

^{7) 『}癸卯春別試榜』(해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장, 해사02 71609-00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제공(http://people.aks.ac.kr/index.aks)

^{8) 『}선조실록』 186권, 선조 38년(1605) 4월 16일(경신): 宣傳官羅德憲書啓. 臣三月二十六日,奉標信、齎有旨二度,九日至咸興府巡察使徐渻處親授,四月初四日,又到行營節度使金宗得處,有旨親授後,因問潼關陷沒之狀. ···

^{9)『}壯巖遺集』卷之七 年譜:四十年壬子,公四十歲.通判義州.『頤齋遺藁』卷之十八 行狀:壬子授義州府判官.





紅牌

<그림 1> 1603년(선조 36) 羅德憲 〈그림 2> 1619년(광해군 11) 通政大夫 羅德憲 告身

1619년 6월 나덕헌은 정3품의 통정대부에 임명되어 당상관에 올랐다. 10) 나덕헌에게 내려진 고신에서 연호의 左傍書에 '禿城의 中軍으로 별도로 軍 器를 마련할 때에 감독하고 힘쓴 공이 매우 가상하여 加資한다는 내용으로 왕명을 받든다.'(禿城中軍, 別措軍器, 監董効力之功, 極爲可嘉, 加資事, 承 傳.) 라고 기재되었다. 이를 통해 나덕헌이 수원에 있는 禿城의 中軍을 역 임한 것과 軍器를 마련할 때에 감독한 공으로 加資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19년(광해군 11) 8월 나덕헌은 吉州牧使 兼咸鏡北道防禦使에 임명되어 지방의 군사지휘관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국왕은 지방의 관찰사·유수·절도 사·방어사 등에게 비상시에 병력를 동원할 때에 사용하는 密符의 우측과 密 符論書를 내려주었다. 광해군은 나덕헌에게 密符 제41부와 함께 다음과 같 은 밀부유서를 내려주었다.

^{10) 『}壯巖遺集』 年譜에서는 1616년(광해군 8)에 通政大夫에 오른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羅德憲 告 身을 통해 1619년(광해군 11)에 통정대부에 加資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壯巖遺集』卷之七 年譜:四十四年丙辰,公四十四歲,是年十月服闋,由水原中軍,陞通政,



<그림 3> 1619년(광해군 11) 咸鏡北道防禦使 羅德憲 諭書

兼咸鏡北道防禦使 羅德憲에게 내리는 諭書.

경은 한 지방을 위임받았으니 맡은 임무가 가볍지 않다. 무릇 군사를 일으켜 機微에 대응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며 적을 제압하는 것은 한결같이 응당 평상시의 일이며, 본래 옛날 법도에 있다. 생각건대 혹시 내가 경과 독단으로처리할 일이 있으면, 密符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 또 뜻밖의 간사한 모반을 미리 방지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만일 특별한 命이 있으면 밀부를 합쳐서의심이 없는 후에 명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押한 제41부를 내려주니경은 이를 받으라. 그러므로 유시한다.

만력 47년 8월 18일.11)

광해군이 함경북도방어사 나덕헌에게 내린 밀부유서의 내용은 앞부분에 한 지방을 맡은 군사지휘관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제압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임무를 수록하였다. 뒷부분에는 군사를 동원할 경우에 밀부의 좌측과 우측을 합쳐서 의심이 없는 후에 시행하라는 것과 밀부 제41부를 내려준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¹¹⁾ 諭兼成鏡北道防禦使羅德憲. 卿受委一方, 體任非輕, 凡發兵應機, 安民制敵, 一應常事, 自有舊章. 處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 非密符, 莫可施爲. 且意外奸謀, 不可不預防, 如有非常之命, 合符無疑然後, 常就命. 故賜押第四十一符, 卿其受之, 故諭. 萬曆四十七年八月十八日.



<그림 4> 1619년(광해군 11) 咸鏡北道防禦使 羅德憲 有旨

右副承旨 趙纘韓[着名]

지금 변방의 근심이 더욱 위급하여 방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關防을 경계하여 지키는 것과 절제하고 대책을 세워 응하는 일을 경이 각별 히 점검하여 신칙하고 진심으로 거행하여 위급함에 임해서 소홀하여 생기는 근심이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有旨를 내린다.

만력 47년(1619, 광해군 11) 11월 22일

(뒷면) 함경북도방어사 羅德憲이 開拆하라. [着名]12)

또한 1619년(광해군 11) 11월 광해군은 함경북도방어사 나덕헌에게 당부하는 명령으로 유지를 내려주었다. 유지는 국왕의 명령을 지방의 관원에게 전달할 때 승정원의 승지가 왕명을 출납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당시 광해군은 변방의 군사지휘관에게 강변이 얼어붙고 방비가 허술하여 오랑캐가쳐들어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를 허술하게 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13) 아울

¹²⁾ 右副承旨趙[着名] 目今邊虞益急,防備之事,不容少緩,關防把守,節制策應等事,卿其各別檢飭,盡心擧行,俾無臨急疏虞之患事,有旨.萬曆四十七年十一月二十二日.(背面)咸鏡北道防禦使羅 開拆[着名]

^{13) 『}광해군일기』146권, 광해군 11년(1619) 11월 1일(경진): 備忘記傳曰, 目今江邊, 已爲氷合, 邊圍虛疎, 而胡書不答, 防備無形, 長驅之患, 不言可知. 此賊中原大鎭攻陷時, 每乘掩襲, 來犯我國, 亦必用此計矣. 夜間邊鎭, 各別堅守, 滿浦·碧潼, 多入火手, 晝夜戒嚴, 勿令虛疎. 如間諜細作等事,

러 광해군은 나덕헌에게 지금 변방이 매우 위급하여 방비하는 일을 소홀히할 수 없으니 각별히 점검하여 신칙하고 진심으로 거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부승지 趙續韓이 광해군의 명령을 받아서 유지로 작성하였고, 승정원의 서리를 통해 나덕헌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1622년(광해군 14)에 길주목사의 임기를 다 채우고 당상선전관에 임명되었다.14)

인조가 즉위한 후 1624년(인조 2)에 이괄은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나덕헌은 도원수 張晚을 도와 鞍峴에서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하여 1625년(인조 3)에 나덕헌은 振武原從一等功臣에 녹훈되었고, 鳳山郡守에 임명되었다. 15) 1628년(인조 6) 10월에 나덕헌은 安岳郡守 兼黃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임명되었다. 16) 나덕헌은 안악군수 시절에 '자신을 봉양할 때에는 매우 간략하게 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질 때에는 정성을 다하여 軍民들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인조에게 보고되었다.17)

1630년(인조 8) 4월에 나덕헌은 과거 길주목사 시절에 일로 贓汚罪의 혐의를 받아 파직되었지만, 곧바로 사면되었고 이어서 명나라 장수 劉興治의接件使에 임명되었다. 18) 당시 평안도 鐵山의 概島에 주둔한 명나라 군대에서 유흥치가 陳繼盛과 劉應鶴 등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19) 나덕헌은 가도에 파견되어 유흥치의 상황을 장계로 올려 보고하였고, 또한 평안도 철산·선천 등의 지역에서 당시 명나라 군대와 도망친 漢人 등의 상황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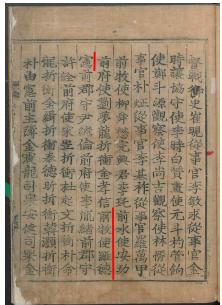
十分詳密譏察事, 下諭于體察副使·平安監兵使處, 以擺撥往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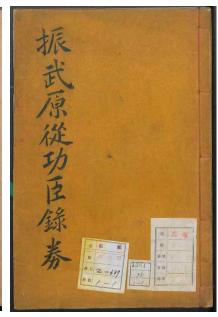
^{14) 『}壯巖遺集』卷之七 年譜: 二年壬戌, 公五十歲. 秩滿, 轉拜堂上宣傳官.

^{15) 『}壯巖遺集』卷之七 年譜: 四年甲子,公五十二歲. 是歲李适叛,公以前牧使,佐都元帥張晚,蹙賊于鞍峴,與南以興·鄭忠信,協謀大捷,… 只錄振武原從一等,除鳳山郡守.

^{16) 『}승정원일기』 23책, 인조 6년 10월 8일(을미) : 羅德憲爲安岳郡守.

^{19)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1630) 4월 19일(무진) : 督府都司劉興治作亂, 殺副摠兵陳繼盛及欽 差通判劉應鶴, 自領其衆.





<그림 5> 1625년(인조 3) 『振武原從功臣錄券』20)

고하였다.21) 1630년 11월에 나덕헌은 접반사에서 체차되어 돌아왔다.22)

접반사 이후에 나덕헌은 주로 평안도 지역의 지방 수령을 역임하였고, 또한 중국 사신으로 임명되어 심양에 다녀왔다. 1633년(인조 11) 12월에 定州牧使에 임명되었고,²³⁾ 1635년(인조 14) 4월에 昌城都護府使에 임명되 었으며, 1635년(인조 14) 12월에 義州府尹에 임명되었다. 1634년(인조 12) 9월에 나덕헌은 추신사에 임명되어 심양에 갔는데, 後金에서 禮單이 부족 한 것과 遠征의 노고를 위로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秋信使 나덕헌을 붙잡 아 두었다.²⁴⁾ 이때 나덕헌은 인조에게 장계를 올려 후금의 요구한 내용이

²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637 (디지털 장서각 홈페이지 http://jsg.aks.ac.kr)

^{21) 『}승정원일기』 30책, 인조 8년(1630) 5월 19일(무술): 平安監司書目,接伴使羅德憲狀啓謄草, 興治領船四十隻,十三日向登州云云事,蓋德憲,聞鐵山唐撥將之言而狀啓.

[『]今정원일기』30책, 인조 8년(1630) 8월 20일(정묘): 權鑊,以備邊司言啓曰,島中每以刷還逃漢爲言,而劉將亦有告示矣,在京漢人等,旣已捉給差官處,宜令承文院具咨計聞名數,以付差官之行,而一路前後押送漢人,到宣川,令接伴使羅德憲,亦爲文牒計聞入送之意,並入於咨文,爲當,敢啓.傳曰,依啓.

^{22) 『}승정원일기』 31책, 인조 8년(1630) 11월 20일(을미) : 羅德憲接伴使遞來.

²³⁾ 나덕헌은 1633년(인조 11) 12월 14일에 通政大夫 行定州牧使로 임명되어 고신은 받았으나 곧 바로 12월 27일에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定州牧使에 부임하지 않았다.

^{24)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1634) 11월 12일(갑자): 秋信使羅德憲往虜中, 汗自敗還之後, 恐

나 당시 후금의 상황을 보고하였다.25)

1636년(인조 14) 2월에 春信使로 임명되어 인조에게 하직한 후에 출발하였고,26) 도중에 의주에서 回答使 李廓이 합류하여 함께 심양으로 향하였다. 4월에 후금의 태종은 국호를 淸으로 고치고 황제를 칭하며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나덕헌과 이확은 賀禮를 거부하였는데, 당시 거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의관이 다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졌어도 끝까지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27) 또한 청 태종이 내린 국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하는 문제로 국서를 몰래 돌려보내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나덕헌과 이확이 하례에 참여했다고 오해하여 두 사람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인조는 나덕헌과 이확을 백마성과 선천으로 유배 보냈다. 이후청 태종의 하례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나덕헌과 이확은 유배에서 풀려났고, 1637년(인조 15) 5월에 나덕헌은 三道統禦使로 임명되었다.

나덕헌은 선조 연간에 무과에 합격하여 광해군 연간에 당상관의 지위에 올랐고 지방 수령과 군사지휘관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榜目에는 나덕헌의 과거 합격 내용 수록되지 않았고 『선조실록』에 나덕헌 관련 기사는 매우 소략하였으며, 심지어 『광해군일기』에는 1건도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전하는 나덕헌 고문서를 통해 나덕헌의 관직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덕헌 고문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3. 『忠烈公三道統禦營錄』과 관직 활동

나덕헌은 1637년(인조 15)부터 1639년(인조 17)까지 삼도통어사(이하 통어사)로 재직하였다. 통어사 재직 기간에 발급하거나 수취한 각종 공문서는 『忠烈公三道統禦營錄』(이하『통어영록』)에 수록되었다. 『통어영록』은 1637

我國知其事,先自恐喝以爲,禮單旣減其數,且不慰遠征之勞.遂留德憲,貽書責之,書中多有悖慢之語.我國使宣傳官李廷顯,齎答書以遣之.

^{25)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1634) 11월 30일(임오); 『승정원일기』 45책, 인조 12년(1634) 12월 17일(기해).

^{26) 『}승정원일기』 45책, 인조 14년(1636) 2월 9일(갑신): 下直, 春信使羅德憲.

²⁷⁾ 신해진 역, 앞의 책, 79쪽.





<그림 6>『忠烈公三到統禦營錄』

년부터 1639년까지 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올린 啓本·狀啓·箋文, 인조가 내린 教書, 비변사·병조·호조·경기관찰사·훈련도감 등과 주고받은 關·牒 모 등을 수록한 등록이다. 먼저 나덕헌이 통어사에 임명되어 부임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통어영록』을 통해 통어사로 재직할 당시에 나덕헌의 관직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三道統禦使의 임명과 부임

1637년 5월에 나덕헌은 三道統禦使·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에 임명되어 서해의 수군을 통솔하였다. 통어사는 통제사와 함께 수군을 통솔하는 수군지휘관으로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을 담당하였다. 정묘호란 이후 강화도에 대한 방비가 중요한 상황으로 인해 1632년(인조 10) 9월에 통어사를 설치하고 경기수군절도사와 교동부사를 겸직시켰다.²⁸⁾

^{28) 『}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1632) 9월 19일(잡인). "知中樞府事鄭應聖上疏曰, 江都, 即京城之保障. 脫有虜賊長驅之患, 則舟楫不備, 何策可濟. 請依前規, 復立京江舟師, 定一武將, 整頓待變, 則必無蒼黃顚倒之事. 且以京畿水使, 稱統禦之號, 兼制公清·黃海舟師, 則可能相須而濟矣. … 答曰,



<그림 7> 1637년(인조 15) 兼喬桐都護府使 羅德憲 告身

1637년 5월 22일에 인조는 나덕헌에게 삼도통어사·경기수군절도사 고신과 경교동도호부사 고신을 내려주었다. 병자호란 직후에 고신 등의 문서에명나라 연호 대신 간지를 기재하는 제도에 따라 나덕헌 고신에는 丁丑이기재되었다.

6월 7일에 나덕헌은 인조에게 辭朝를 거행하고 하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조는 나덕헌을 인견하고 소회를 말하라고 명하였다.²⁹⁾ 나덕헌은 경기가 三南보다 전선의 제도가 부족한 점, 감소한 수군과 격군의 숫자,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船材, 배에 설치하는 대포·방패, 배를 만드는 비용 등의소회를 인조에게 진달하였다. 인조는 나덕헌에게 통어사에 부임하여 수군의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나덕헌은 통어영과 통제영이 모두 세 개의 道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공동으로 속하는 충청도는 어디에서 관할하는 것인지를 인조에게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인조는

依啓. 赴京船亦令移隷於江都."

노인환, 「조선시대 密符의 제도와 운용」, 『군사』 155, 군사편찬연구소, 2020, 143쪽.

^{29) 『}승정원일기』 58책, 인조 15년(1637) 6월 7일(갑진): 下直, 忠州牧使尹墀, 京畿水使羅德憲. 傳于金尚曰, 京畿水使羅德憲引見.

충청도의 경우에 청나라를 방어할 때는 통어영이 통제하고 왜를 방어할 때에는 통제영이 통제하라고 하여 충청도 수군의 지휘권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었다. 이 밖에 나덕헌은 청나라의 군대·법제·관제 등에 대한 인조의 물음에 답변하였다.30)





<그림 8> 1637년(인조 15) 三道統禦使 羅德憲 敎書와 諭書

인조와 나덕헌 사이에 대화가 끝난 후에 인조는 나덕헌에게 교서와 유서와 밀부를 내려주었다. 나덕헌에게 내려준 교서는 통어사에 임명된 내용과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내린 使命訓諭教書이다. 교서의 내용은부임지인 喬桐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나덕헌의 품성과 경력을 언급하여 통어사에 적합한 이유를 언급하였다. 이어서 통어사에 임명된 사실과임무를 잘 수행하라 당부의 내용 등을 수록하였다. 나덕헌은 통어사 교서·유서와 밀부 제37부를 받은 후에 통어영이 있는 교동부로 출발하였다.

통어영의 부임 과정에서 나덕헌은 6월 8일에 배를 타고 陽川縣의 幸州에 가서 전 경기수군절도사 겸삼도통어사 申景珍을 보고 통어사의 兵符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6월 11일 통어영에 도착한 직후에 나덕헌은 병부의 인

^{30) 『}승정원일기』 58책, 인조 15년(1637) 6월 7일(갑진).

수인계와 통어영에 부임한 경과에 대해 인조에게 啓本을 올려 보고하였다.³¹⁾

2) 통어영의 수군 재건

나덕헌은 통어사에 임명된 직후에 인조에게 밝힌 所懷와 같이 통어영의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통어영의 수군은 병자호란 이후에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나덕헌은 통어영의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기존의 戰船을 수리하거나 새로 건조하고, 수군을 증원하며, 수군에 필요한 軍器 를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병자호란 직후 나덕헌이 부임한 1637년(인조 15) 6월에 통어영 전선의사정은 매우 열악하였다. 나덕헌은 부임한 다음날에 본영의 전선과 제작된연월일을 모두 조사하였다. 당시 본영에는 戰船 3척, 防牌船 1척, 兵船 4척, 伺候船 7척으로 모두 15척의 배가 있었으나 대부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덕헌은 부근의 船匠을 불러 모으고 또한 호남과 영남에서도솜씨가 좋은 장인을 모아서 배를 수리하였다. 또한 駕木이 썩은 전선의 경우에는 근처 섬에 자재가 없어서 안면곶에 보내 수리하였다.32)

나덕헌은 부서진 전선의 수리와 함께 새로운 전선을 건조하였다. 통어영은 소속된 모든 섬에 자재가 없어서 이전부터 충청도의 안면곶에서 전선을 건조하였다. 부임한 첫해에는 勅使의 행차에 사용할 물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전선을 건조할 수 없었다.³³⁾ 그 다음해인 1638년(인조 16) 1월에 나덕헌은 公淸水使에게 솜씨 좋은 장인을 모으게 하였고, 통어영 소

^{31)『}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6월 11일: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德憲, 謹 啓為傳授事. 節到付, 兵曹關內, 節啓下敎, 曹啓目, 前京畿水軍節度使申景珍所受發兵符, 新除授羅 德憲處, 傳授為白只為, 行移何如. 崇德二年五月二十五日, 同副承旨圓圓圓次知. 啓依允敎事是去有 等以, 敎旨貌如, 奉審圓圓圓(施行事)關是白乎等用良, 同兵符乙, 臣由水路, 乘船下來為白如乎, 本月初八日, 陽川地幸州良中, 面看傳授後, 同月十一日到任為白有臥乎事是良余, 謹具啓聞. 崇德二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臣羅.

^{32)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9월 15일: 第三戰船段置,前前水使崔震立,辛未十一月造作是白乎等以,駕木爲半腐朽,而近處諸島,絶無船材,欲俱船格・匠人,下送于安眠串.

^{33)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6년(1638) 1월 8일: 戰船一隻乙, 爲先新造, 計料爲白如可, 適値 勅使之行, 臣職兼喬桐, 許多支用之物, 殘邑物力以, 拮据措辦, 軍民大役乙, 不得竝舉.

속 군관과 새로 무과 급제한 관원을 안면곶에 내려 보내서 감독하게 하여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선을 건조하고자 하였다.34) 5월에 안면곶에서 만 든 船體를 통어영에 이동하여 정박시켰고. 이후 전선에 판옥과 방패 등을 단장하는 일은 나덕헌이 직접 감독하여 새로운 전선을 완성하였다.35) 통어 영 본영에서 전선의 수리와 건조를 끝낸 후에 나덕헌은 부임하고 1년 후인 1638년(인조 16) 6월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영에 會付된 戰船과 兵船, 각양의 배 15척 내에 2척은 전 水使 申景珍이 새로 만들었고 그 남은 13척은 改槊할 차례이므로, 신이 도임한 후에 혹 새 로 만들거나 혹 添木하고 改槊하여 모두 일을 끝냈습니다.36)

나덕헌은 통어영 본영뿐만 아니라 소속된 각 鎭과 浦의 전선을 수리하고 자 노력하였다. 당시 통어영에 소속된 진과 포는 花梁鎭·德浦鎭·鐵串鎭·井 浦·永宗浦가 있었다. 나덕헌은 부임한 직후에 관할하는 각 진과 포를 순행 하여 邊將의 勤慢과 전선의 상황을 파악하였다.37) 그리고 본영과 각 진과 포에 있는 전선과 병선을 조사한 후에 數爻成冊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8) 그러나 각 진과 포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수군이 매우 부족하였고, 칙 사의 행차로 인하여 변장들이 전부 차출되었기 때문에 부서진 전선과 병선 을 수리하지 못하였다. 또한 진과 포에서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는 工匠의 料布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전선의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후 나

^{34) 『}忠烈公三到統禦營錄』인조 16년(1638) 3월 1일 : 本府新恩出身金淑段, 稍諳舟楫之事是白乎等 以, 前矣俱由馳啓, 新戰船監造次以, 忠清道安眠串, 已爲發送爲白有在果,

^{35) 『}忠烈公三到統禦營錄』인조 15년(1637) 6월 19일 : 募軍難得, 遠地之役, 非臣親自監督, 未能 及時造作, 第三朔僅以畢造, 回泊爲自有去乙. 船上板屋粧修事段, 臣親自監董, 別樣制作, 而工匠役 軍等,料布段,米五十七石,木十同半以,僅僅完了爲白有齊.

^{36)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6년(1638) 6월 19일 : 本營會付. 戰兵各樣船十五隻內. 二隻. 前 水使申景珍新造,其餘十三隻段,改槊當次乙仍于,臣到任之後,或新造,或添木改槊,並爲畢役爲白 有齊.

^{37) 『}忠烈公三到統禦營錄』인조 17년(1639) 2월 8일 : 臣去丁丑六月十一日, 到營卽時, 巡審所管各 鎮堡, 邊將勤慢·舟緝利鈍, 從實摘奸, 啓聞定奪事是白乎矣.

^{38) 『}忠烈公三到統禦營錄』인조 15년(1637) 6월 29일 : 先到各官及未到各官分秩成冊, 及本營與各 浦所在戰兵船數爻成冊, 幷兩件乙, 上送爲在果,

덕헌은 각 진과 포에 군관을 파견하여 전선과 병선의 수리 여부를 점검하고 독촉하였다. 이로 인하여 철곶진은 전선 1척을 새로 건조하였고, 나머지 진과 포에서도 전선과 병선의 수리를 끝마쳤다.³⁹⁾

나덕헌은 전선의 보강과 함께 통어영에 부족한 수군을 증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병자호란 후에 통어영 수군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는데, 당시 邊將 등이 나덕헌에게 보고한 내용과 나덕헌이 인조에게 올린 장계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邊將 등이 보고한 내용에, '난리를 겪은 후에 소속된 각 浦의 수군이 한 명도 鎭에 들어와서 방어한 적이 없었고 土兵도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돌아와모인 사람도 보잘 것 없어서 戰船과 兵船을 강변에 걸어 두고 살피고 지킬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 40)

營에 속한 수군의 원래 수 1,076명 중에서 포로가 되거나 죽거나 달아나 거나 사망한 수가 185명에 이릅니다. 1년을 계산하여 매달 마련하여 번을 나누면 1달에 入防하는 수는 겨우 74~75명인데, 전선·병선·사후선 모두 15척에 살피고 지킬 각 差備軍도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이 되고, 葛物을 채취하고 草斑을 제작하는 것도 기간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41)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나덕헌은 먼저 연해에 사는 남아 있는 수군으로 우선 들어와서 방어하거나 전선과 병선을 지키게 하였다.⁴²⁾ 전란으로 피해

^{39)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7년(1639) 2월 8일: 邊將等,若干入防水軍叱分以, 亂離中,類敗戰兵船乙,未及修造,而又值勅使之行,邊將等,沒數逢差出站,十二月還鎮,仍致合氷流澌,塞津是白乎等以,… 其他四浦邊將段置,戰兵船修緝工匠料布,辦出無路,未即完就叱分不喻,…上年十月分,臣矣軍官發定,各浦戰兵船修緝與否,一一檢督,則鐵串僉使朴翰男,報備邊司,親自下去安眠串,新造戰船一隻回泊,今始畢役是如爲白乎於,其他四浦邊將等段置,戰兵船楫物,幷以幾盡修緝是如爲白有臥乎等以.

^{40) 『}忠烈公三道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6월 29일: 邊將等所報內, 自經亂之後, 所屬各浦水軍乙, 無一名入防鎭下, 土兵段置, 散移四方, 還集者零星, 同戰兵船乙, 掛置江邊, 看護無人叱分不喩,

^{41)『}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9월 15일 : 營屬水軍元額一千七十六名內, 被據·被殺· 逃故之數,至於一百八十五名.計一年,每朔磨鍊分番,則一朔入防之數,僅至七十四五名是白去等, 戰兵伺候船,幷十五隻,看護·守直各差備軍,猶患不足,葛物採取·草苇造作,恐未及期.

를 입은 수군에게 임시방편으로 1637년 7월과 8월에 반으로 줄어서 15일씩 番에 서게 하였고, 9월부터는 전례에 따라 立番하여 수군을 확보하였다. 43) 또한 나덕헌은 통어영의 丁壯을 조사하고 점검하여 각 배의 사공과격군으로 나누어 배치하였고, 그 가운데 영리한 사람을 뽑아서 包의 사격을 훈련시켰다. 44)

나덕헌은 교동부에서 소속된 육군을 수군이 회복되는 동안에 서울로 올라가서 番을 서는 것을 면제하고 수군을 도와 줄 것을 인조에게 장계를 올려 요청하였다. 또한 비변사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啓目을 올려 보고하여 인조의 윤허를 받았다. 이로 인해 교동부에 소속된 육군 48戶는 통어영의 수군에서 전선과 많은 楫物을 수리하게 하였다. 45) 또한 나덕헌은 교동부에 거주하면서 武科에 새로 급제한 관원을 수군에 배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조가 윤허하지 않아서 시행되지 않았다.

나덕헌은 전선과 수군뿐만 아니라 부서진 軍器를 수리하고 새롭게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병자호란 때에 군병들에게 나누어준 활과 화살을 환수한 후에 점검하니 筋角이 부서지거나 樺皮가 벗겨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활과 화살을 만드는 弓矢人을 소집하여 부서진 黑角弓·鄕角弓·交子弓과 長箭·片箭 등을 전부 수리를 끝낸 후에 병조에 보고하여 활과 화살의 내역을 會錄하였다. 46) 활·화살과 함께 화약을 만들 때 필요한 硫黄을 마련하기 위해 인조에게 장계를 올려 요청하였고, 비변사에서는 軍器寺에 보관

^{42)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6월 29일 : 沿海所居餘存水軍以, 為先入防, 或戰兵船 守直為於,

^{43)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7월 18일: 去七八月兩朔段, 一依啓聞定奪, 廟堂分付, 半朔以, 知委起送爲旅, 自九月爲始, 依前準朔立番事段置, 並只預先知委爲乎矣,

^{44) 『}忠烈公三到統禦營錄』인조 16년(1638) 3월 1일 : 臣査點營下丁壯, 分把各船沙格爲白遣, 其中 抄擇伶俐者, 教鍊砲射計料,

^{45)『}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9월 25일: 目今整理船艦,其役方殷,且四十八戶之軍,不至甚多,而皆以爲水業之人,以居在戰船近處,則依狀啓,限水軍蘇復間,除上番,添助舟楫役,似爲便當.以此意,該曹良中,幷爲分付,何如.崇德二年九月二十四日,左副承旨臣金霱次知. 啓依允教事是去有等以,教旨內事意,奉審施行向事. 崇德二年九月二十五日.

^{46)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6년(1638) 7월 4일, 8월 18일.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6년(1638) 3월 1일: 而營府舊儲軍器,兵亂時破落,弓箭段,幾盡 修補爲白有乎矣.

된 유황을 통어영에 전달하였다. 이 밖에 통어영에서는 바닷가에 위치하여 화살을 만들 때 필요한 魚膠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어교를 군기시에 올려 보내 지원하기도 하였다.

3) 鐵串鎭의 설치

통어사의 재직 중에 나덕헌은 鐵串鎭의 관아를 건설하고 전선을 마련하여 서해에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방어하는데 힘썼다. 1636년(인조 14) 10월에 濟物과 草芝를 철폐하고 江華의 昇天府에 철곶진을 설치하였다. 제물진과 초지진의 관아 건물를 철거하여 철곶진에 옮겨 두었는데 병자호란 중에 재목과 기와가 흩어져 없어졌고 이로 인해 철곶진 관아를 건설하지 못하였다. 1637년(인조 15) 2월에 철곶첨사에 임명된 朴翰男은 관아의 건물이 없이 마을의 民家를 借入하여 업무를 보았다.47)

철곶첨사 박한남은 나덕헌에게 민가에 入接하고 있는 상황과 관아를 짓고 鎭을 설치할 곳이 모두 민전이라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였다. 나덕헌은 철곶첨사의 보고를 인조에게 보고하였고, 인조는 나덕헌에게 친히 巡歷하여 설치할 鎭을 살피고 형세를 상세히 啓聞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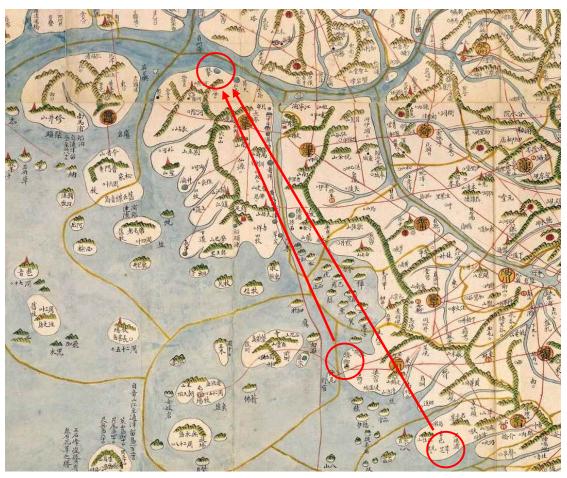
1637년 9월 20일에 나덕헌은 철곶에 도착하여 철곶첨사와 鎭을 설치할 곳을 살펴보았다. 49) 鎭을 설치하기에 합당한 민전을 宦에서 구입하기 위해 庫數를 조목별로 열거하고 成冊하여 비변사에 올려 보냈다. 또한 철곶첨사가 민가를 차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진을 설치할 민전에 대해 비변사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50)

^{47) 『}승정원일기』 56책, 인조 15년(1637) 2월 22일(임진) : 兵批, 以奇宗獻爲公淸水使, 朴翰男爲 鐵串僉使.

^{48)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9월 22일: 承政院開拆. 前矣到付, 備邊司回啓關內, 節該, 統禦使書狀內, 草芝·濟物舊鎭旣撤, 新堡未設, 入接民家, 殊非可久之道, 水使親爲巡歷, 審其設堡, 形勢詳細啓聞, 以憑處置向事, 回啓關是白有亦.

^{49)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9월 22일: 同鐵串鎭看審事乙, 今月二十日沙, 臣親到鐵串, 僉使率良遣, 看審, 可以爲設鎭是如.

^{50)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9월 22일: 張紳留守時, 與前水使臣申景珍眼同, 擲奸



<그림 9> 『東輿圖』에 수록된 鐵串(上)·濟物(中)·草芝(下)

9월 29일에 비변사에서는 나덕헌에게 민전의 가격이 염려되니 통어영에서 편의에 따라 換給하라고 하였다. 또한 관아의 건물을 건설하는 일은 지체할 수 없으므로 여러 방면으로 힘써서 급히 일을 마치라고 하였다. 51) 이후 1639년(인조 17) 2월에 나덕헌이 소관하는 다섯 포구를 순행하고 인조에게 보고한 장계에서 철곶진에 10여 개의 관아가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定奪處,則僉使時方借入民家,而所謂可合設鎭之處,皆是民田,自公家,給價買得,然後設鎭緣由乙,備邊司以,民田庫數條列成冊,上送爲白在果. · · · 當初撤破兩鎮,合爲鐵串, 陞號,其意有在,而遷延時日,設鎭處乙,迄未究竟,僉使時方借入民家,事未妥當,令廟堂,急速處置爲白只爲,

^{51)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9월 29일: 鐵串, 既是新設, 設鎭之處, 乃是私田. 此時田地, 其價必慮, 自本營, 隨便換給爲白乎矣, 修繕之役, 不可遅延, 多方拮据, 作急完役之意, 行移何如.

있다.52)

철곶진이 설치되고 관아가 건설되었지만 수군에게 필요한 전선은 없었고 부서진 防牌船만 남아있었다. 철곶진에서는 전선을 새롭게 만들 때에 匠人 에게 지급할 供料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나덕헌은 철곶첨사 박한남이 안면 곶에 직접 내려가서 감독하는 것과 충청수사에게 船匠과 材木을 공급해 줄 것을 비변사에 요청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패선을 충청도 안면곶에 내려 보내서 나무를 덧대고 수리하여 전선으로 만들었다.⁵³⁾

전선뿐만 아니라 철곶진을 지키는 수군이 매우 부족하였다. 철곶진이 설치된 후에 土兵은 3명만 다시 모였고, 전선과 병선을 상시에 지키는 군사와 都沙工이 매우 부족하였다.54) 부족한 수군을 마련하기 위해 나덕헌은 철곶진 부근에 거주하는 육군과 철곳진에서 먼 곳에 위치하는 수군을 番을 바꾸어서 들어와 방어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덕헌의 요청은 바로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비변사와 병조에서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淸 勅使의 支待

나덕헌은 재임기간 동안에 매년 淸의 勅使를 支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칙사가 의주를 거쳐 한양으로 오는 동안에 통어영의 관할 구역을 지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나덕헌에게 칙사를 지대할 물품을 요청하였다.

1637년(인조 15) 9월 나덕헌은 부임 직후에 칙사의 행차에서 광주부를

^{52)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7년(1639) 2월 16일: 夕水到鐵串, 翌日, 戰·兵船, 各樣軍器, 其他, 移設之後, 營造公廨等物乙, 一一看審, 則僉使朴翰男, 經亂之後, 自南漢, 除授本職, 草芝濟物撤破, 移鎭之後, 借入民家, 經屬破家材瓦, 僅僅鳩集, 公廨造作, 至於十有餘,

^{53)『}忠烈公三到統禦營錄』인조 17년(1637) 2월 16일: 同浦戰船, 只有頹敗防牌船<u>是白去乙</u>, 上年 因渠所報, 啓聞定奪, 工匠料布<u>乙</u>, 別樣措備, 親自下去忠淸道安眠串. 數月之內新造戰船回泊, 許多 楫物<u>乙</u>, 沒數新備, 船制極其牢固.

^{54)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7년(1637) 2월 16일: 大概五堡之中, 鐵串, 新設之鎭以, 鎭下土兵數三名叱分, 還集爲白有遣, 戰·兵船常時守直軍士段置, 每朔入防之軍以, 除除良除防, 都沙工給代. 其數不多是白去等.

대신하여 勅使의 支待를 담당하였다. 역참에 있는 여러 가지 供帳·器俱·館字를 수리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여 밤을 새서 마련하고 역참에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55) 10월에 나덕헌은 칙사가 왔을 때 거행하는 觀武才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였고, 통어영의 군관을 梧木站에 보내어 미리 준비하였다.56)

1639년(인조 17) 칙사의 행차에서 호조와 경기감영의 요청에 따라 나덕 헌은 칙사를 지대할 물품을 마련하였다. 1639년 6월에 호조는 나덕헌에게 통어영의 본영과 각 鎮浦에서 필요한 草芚을 빨리 올려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57) 경기감영은 나덕헌에게 칙사에게 필요한 雨具 가운데 草席과 세겹 줄바를 差使員인 철곶첨사에게 운반할 것을 요청하였다.58) 또한 칙사에게 宴享을 베풀 때 사용하는 生蛤·生鮮·落蹄 등의 生魚物을 독촉하여 보내라고 하였다.59)

칙사에 대한 물품과 함께 나덕헌은 칙사가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배를 지원하였다. 칙사의 행차는 臨津(현 경기도 장단)에서 강을 건너 한양으로 이동하였는데, 浮橋를 만들거나 過涉船을 통해 강을 건넜다. 나덕헌이 칙사의 행차에서 배를 支待한 사례는 아래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5)『}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9월 22일: ··· 而又值勅使之行,本府乙,廣州代移定,副天使支待是白乎等以,站上各樣供帳·器俱·館宇修理,萬分緊急,多般拮据,罔夜措置,連續輸送站上乙仍于,殆無暇日. ···

^{56)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5년(1637) 10월 10일: 丁丑十月十三日到付.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 在前天使時, 觀武才所用射帳小革·方席·古道里·熟麻·三甲所·四巨里等例, 自天使時, 水營措備爲如乎, 今番勅使時, 想已備待是在果, 更良申飭爲去乎, 日期聞見, 梧木站以, 前期輸納爲乎矣, 射帳·軍官, 亦爲定送向事. 崇禎二年十月初十日.

^{57)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7년(1639) 5월 30일: 戶曹爲罔晝夜上送. 節啓下敎, 曹啓目, 今此勅使支待雜物, 分定各官, … 後錄雜物, 罔晝夜, 兼程倍道, 及期上納爲乎矣, 查官時, 已措備之物, 下諭卽時必先程是置, 俾無未及生事之患, 以貽後悔爲齊. … 後. 草芚十番. 本營二番. 井浦二番. 德浦二番. 鐵串二番. 花梁二番. 永宗造船以減.

^{58)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7년(1639) 6월 3일: 兼巡察使爲分定事. 勅使時, 雨具等分定, 開後錄爲去乎, 各其差使員處, 急速輸納向事. … 後. 草席二立, 三甲條所一巨里, 差使員, 鐵串僉使處, 輸納次.

^{59)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7년(1639) 6월 3일: 無巡察使爲分定事. 節到付開城府移文內, 勅使時, 『後宴享, 及別廚所用生魚物等, 依前例, 急急知會, 督送事, 關是乎等以, 依謄錄數, 後錄爲去乎, 前期輸納後, 受到付, 考準向事. … 後. 水營生蛤二斗, 生鮮三十尾, 落蹄十月乃等, 各浦分定.

- ① 무인(1638, 인조 16) 9월 24일 到付. 兼巡察使가 相考에 대한 내용이다. 장차 다가올 勅使의 행차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지난해의 예에 따라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臨津의 浮橋는 제외하고 남쪽과 북쪽에 단지 船槍만을 설치하여 過涉船을 많이 취합하는데, 勅使가 타는 배는 亭子船으로 정돈하라. 후록한 선척을 정돈하였다가 다시 移文을 기다려 즉시 돌아와서 정박하라. 중덕 3년 9월 21일.60)
- ② 기묘(1639, 인조 17) 6월 초1일 到付. 兼巡察使가 매우 급하게 돌아와서 정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勅使가 6월 초1일에 말을 타고 출발하겠다는 白牌가 어제 이미 들어와서 臨津에 浮橋를 묶어서 만드는 일이 매우 긴급하니 위 浮橋의 船隻은 이전의 謄錄에 따라 後錄에 기재하였다. 실제鄉所의 色吏와 押領差使員은 德浦僉使와 井浦萬戶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交付하고 到付를 받아서 上使하는데, 役軍 등을 나누어 정한 數爻의成冊을 우선 上使하라. 合行云云. 숭덕 4년 5월 29일.

후록. 浮橋船 3척. 役軍 100명, 謄錄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德浦 20명. 鐵串 28명. 花梁 22명. 永宗 10명. 井浦 20명.⁶¹⁾

①과 ②는 1638년(인조 16) 9월과 1639년(인조 17) 5월에 경기관찰사가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關이다. 1638년 칙사의 행차에서 나덕헌은 臨津의 浮橋 대신에 강의 남쪽과 북쪽에 船槍을 설치하고 過涉船을 지원하였다. 또한 칙사가 타는 배는 특별히 亭子船으로 마련하였고, 경기관찰사의移文이 도착하면 즉시 돌아와서 배를 정박하였다.

1639년 칙사의 행차에서 나덕헌은 강을 건너는 過涉船 대신에 浮橋船을 지원하였다. 당시 칙사의 출발 소식을 들은 후에 臨津의 浮橋를 설치하는

^{60)『}忠烈公三到統禦營錄』인조 16년(1638) 9월 21일:戊寅九月二十四日到付. 兼巡察使爲相考事. 前頭勅使之行,凡事一依上年例爲之,故臨津浮橋除良,南北邊,只設船槍,過涉船,多數聚合爲乎矣, 勅使所騎船段,亭子船以,整齊爲置. 後錄船隻,整齊爲有如可,更待移文,卽爲回泊向事. 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61) 『}忠烈公三到統禦營錄』 인조 17년(1639) 5월 29일: 己卯六月初一日到付. 兼巡察使爲急急回泊事. 勅使六月初一日起馬<u>是如</u>, 白牌昨已入來, 臨津浮橋結造之事, 萬分繁急, 同浮橋船隻, 依前謄錄, 開後錄<u>爲去乎.</u> 實鄉所色吏·押領差使員, 德浦僉使·井浦萬戶處, 罔晝夜交付, 受到付, 上使<u>爲乎矣</u>, 役軍等分定數爻成冊, 爲先上使<u>向事</u>. 合行云云. 崇德四年五月二十九日. 後. 浮橋船三隻. 役軍一百名, 依謄錄分定. 德浦二十名. 鐵串二十八名. 花梁二十二名. 永宗十名. 井浦二十名.

것이 매우 긴급하였다. 나덕헌은 경기관찰사의 요청과 이전의 謄錄에 따라 부교선 3척을 지원하였다. 또한 통어영에 소속된 鎭과 浦에서 役軍 100명 을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통어영록』을 통해 나덕헌의 통어사 시절에 관직 활동을 살펴보았다. 위에 제시한 사례뿐만 아니라 통어사로서 일반적으로 수행한 업무도 『통어영록』에 수록되었다. 예를 들어 매년 6월과 12월에 통어영에 소속된 진과 포의 첨사와 만호에 대한 포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왕의 誕日·正朝·冬至 등에 나덕헌이 올린 箋文과 국왕이 내린 求言敎書·中外頒敎書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나덕헌은 통어사가 처음 설치되고 5년 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관직 활동뿐만 아니라 『통어영록』을 통해 초창기에통어사와 통어영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4. 追贈教旨·諡號教旨와 顯揚

나덕헌은 삼도통어사를 역임한 후 1640년(인조 18)에 68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나덕헌의 사후에 조정에서는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추증교지와 시호교지를 내려 현양하였다. 추증은 종친 및 문무관 實職 2품 이상의관원에 대해 돌아가신 부·조·증조의 관직을 올려주거나 나라에 공을 세운관원에게 사후에 관직을 올려주는 제도이다. 62) 시호는 종친 및 문무관 실직 정2품 이상 관원, 儒賢 및 절의를 지키다 죽은 사람에게 사후에 행적및 업적에 대해 諡號를 내려주는 제도이다. 63)

나덕헌의 추증교지와 시호교지는 숙종 연간과 정조 연간에 내려졌다. 1684년(숙종 10) 3월에 開城留守 李選은 상소를 올려 나덕헌과 李廓이 청의 황제에게 하례하는 반열에 참여하지 않은 절의에 대해 추증할 것을 요청하였다.64) 이선의 상소에 대해 숙종은 여러 대신에게 問議하여 처리하라

^{62)『}經國大典』「吏典」追贈: 宗親及文·武官實職二品以上,追贈三代. [父母準己品,祖父母·曾祖父母各遞降一等. ○亡妻從夫職.]

^{63)『}經國大典』「吏典」贈諡:宗親及文·武官實職正二品以上,贈諡. 『續大典』「吏典」贈諡:儒賢及死節人表著者,雖非正二品,特許賜諡.





<그림 10> 1684년(숙종 10) 羅德憲 追贈 敎旨

<그림 11> 1684년(숙종 10) 羅德憲 妻 全義李氏 追贈敎旨

고 하였고, 대부분의 대신들이 추증을 찬성하였다.

1684년 9월에 숙종은 나덕헌을 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추증하였다. 당시 발급된 나덕헌 추층교지에는 左傍書에 '한 사람의 사신으로 몸소 오랑캐의 조정에 들어가 큰 절개에 임하여 굽히지 않았으니 특별히 贈職하라는 내용으로 判下한다.'('以一介行李,身入虜庭, 臨大節而不屈,特爲贈職事, 判下.)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나덕헌이 중국 사신으로 가서청나라 황제에게 굽히지 않은 일을 포상하기 위해 품계와 관직을 올려 추증한다는 것이었다. 나덕헌이 종2품의 가선대부·병조참판에 추증되었기 때문에 나덕헌의 처 全義李氏도 기존에 淑夫人에서 貞夫人으로 추증되었다.

나덕헌에게 시호교지를 내리는 것은 중국에 다녀온 사신이 <全韻詩>를 가져온 후에 조정에서 논의되었다. <전운시>는 淸 乾隆帝가 역대 황제의 사적을 지은 詩인데, 그 내용에서 중국에 사신으로 간 나덕헌과 이확이 버티고 서서 절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다.65) 도승지 홍국영은 <전운시>를

^{64) 『}今零 3 15 2 ,今零 10 년 (1684) 3 월 11 일 (정 考) : 故兵使李廓·羅德憲等以信使入瀋,適當改號尊稱之際,脅參賀班,抵死不從. 及其將還,付以答書,則廓等託以馬病,留置中路,群議譁然,請置極罪,而獨先正臣金尚憲議不然,遂免大何. 夫以介胄之土,不辱君命,克有所樹,而徒以不能却書,終靳褒美,則是嚙旃海上之蘇卿,亦當以娶婦牧羝之故,而掩其大節,此豈理也哉. 願追加贈命,以示嘉尚之意. … 李廓·羅德憲贈職事,獨右議政南九萬持不可,而諸大臣皆以選言爲是,上特命贈職.

^{65)『}정조실록』8권, 정조 3년 9월 3일(갑신):乾隆全韻詩有李廓·羅德憲抗立不拜之語. 『頤齋亂藁』33권:十二月朔日乙巳. … 初八日壬子. … 附淸主乾隆御製全韻詩一篇. … 乃有朝鮮

언급하면서 1779년(정조 3) 9월 晝講과 次對에서 나덕헌과 이확의 贈諡와 旌閭를 건의하였다. 즉 <전운시>에 수록된 나덕헌과 이확의 충절에 대해 증시와 정려를 통해 별도로 激揚하는 道가 있어야 한다고 정조에게 아뢰었 다. 그러자 정조는 나덕헌과 이확에 대해 증시와 정려를 명하였다.66)

시호를 내려주는 과정은 당사자의 諡狀을 예조에 제출하고 홍문관에 시 장을 보내면 홍문관에서 시호의 3望을 정한 후에 諡號署經을 거쳐서 결정 되었다.67) 이전에 정조의 명이 있었으나 나덕헌의 시장을 제술한 金亮行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시호의 의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68) 1779년 12월 에 정조는 傳敎를 내려 충신 나덕헌의 節義는 탁월한데 오히려 시호가 없 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전에도 시장이 없이 시호를 내려준 전례가 있었으 니 시호를 의논하도록 홍문관에 명하였다.69) 홍문관에서는 나덕헌 시호의 3望으로 忠烈·忠勇·忠毅를 올렸고,70) 吏批에서 최종적으로 忠烈로 시호가 결정되었다.71) 忠烈의 諡註는 '임금을 섬기는데 충절을 다한다(事君盡節)'

使, 不拜志獨乖. 知爲假守禮, 激我戮其儕.

^{66) 『}승정원일기』 1447책, 정조 3년(1779년) 9월 3일(갑신) : (行都承洪旨)國榮曰, 故忠臣羅德憲· 李廓之炳然大節,垂諸千秋而無愧矣,當時名碩,皆以此褒奏於朝,至贈兵曹參判矣,以今番節使回還 時,所得來全韻詩觀之,則其爲彼人之感仰,亦可知矣。李廓則無子孫云,朝家雖欲旌閭贈諡,可謂無 處尋問, 而羅德憲則有後孫云, 來示其私狀本末矣. 如此卓異之人, 宜有別般激揚之道, 故敢此仰達矣. 上曰、贈諡、仍爲旌閭、可也。

[『]정조실록』8귀. 정조 3년 9월 3일(갑신): 書講. 仍行次對. 都承旨洪國榮啓言. 故忠臣羅德憲·李 廓,大節炳然,已加褒贈,而見今年節使回還時,所得全韻詩,尤可見其忠節矣.李廓則無子孫,雖欲 旌贈、無處尋問,而羅德憲,則有後孫云,宜有別般激揚之政矣。令贈諡旌閭。乾隆全韻詩有李廓・羅德 憲抗立不拜之語.

⁶⁷⁾ 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贈諡 행정」, 『고문서연구』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68) 『}頤齋亂藁』 권32. 1779년(정조 3) 12월 26일(병자) : 羅兄出示其先府尹公褒贈曲折曰. 九月二 十七、旣赴驪江、請諡狀于金參判亮行宅、十月再赴、十一月二十二日、始以諡狀新成者、還京、二十 日, 呈于奉常寺矣. 其二十一日, 金參判不幸卒逝. 十二月十一日, 應教趙尚鎭, 以金亮行今旣卒逝, 所撰諡狀, 準例不可用, 勢將不得議諡,

^{69) 『}승정원일기』 1454책, 정조 3년(1779년) 12월 11일(신유) : 上曰, 羅德憲節義卓異, 而獨漏於 議諡者,何故云耶.有防曰,故參判金亮行,製其諡狀,而今已作故,故不得入於議諡中矣.上曰,前 例, 何如. 有防曰, 或有爲之之例云矣. 上曰, 檢詳先退, 分付玉堂, 今日署經中. 同爲舉行. 可也. 宇 鎭先退,上命書傳敎曰,古忠臣羅德憲節義,可謂卓越,尚無易名之典,已是欠事,而今聞筵臣所奏以 諡狀事, 今番不得議謚云, 曾有可據之例, 今日署經, 同爲擧行之意, 檢詳又聽筵教, 以此分付弘文館.

^{70) 『}頤齋亂藁』 권32, 1779년(정조 3) 12월 26일(병자): 贈兵判羅德憲. 忠烈. [事君盡節曰忠, 剛 克爲伐曰烈. 首點. 〕 忠勇. 「忠上同,臨難不惧曰勇. 〕 忠毅. 「忠上同,强而能斷曰毅. 〕

^{71) 『}승정원일기』 1454책, 정조 3년(1779) 12월 12일(갑자): 有政. 吏批, … 贈兵曹參判羅德憲爲 忠烈.

는 의미로 忠과 '강직하고 자기를 이겨 공으로 삼다(剛克爲伐)'는 의미로 '烈'이 사용되었다.

나덕헌의 시호교지는 곧바로 발급되지 않았고 2년 후인 1781년(정조 5) 10월에 발급되었다. 이것은 이확의 시호는 나중해 정해져서 나덕헌과 이확의 시호교지를 함께 내리기 위해 2년 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덕헌의 시호교지에는 청의 연호 대신에 '崇禎紀元後三辛丑'으로 기재되었는데, 당시 直提學 沈念祖의 요청에 따라 시행되었다. 심염조는 나덕헌·이확과같은 사람에게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례에따라 거행할 것을 아뢰었고 정조는 윤허하였다.72)



<그림 12> 1781년(정조 5) 羅德憲 諡號敎旨

나덕헌에 대한 旌閭도 시호교지를 받은 1781년에 거행되었다. 정려는 효도하거나 우애한 사람과 절개와 의리를 지킨 사람에게 관직이나 賞을 주고뛰어난 사람은 旌門을 세워주거나 후손에게 煙戶雜役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73) 旌閭門은 남아있지 않지만 정려문을 탁본한 자료가 현전하고

^{72) 『}승정원일기』1494책, 정조 5년(1781) 9월 29일(무진): 上曰, 若贈正卿則自可賜諡矣. 念祖曰, 然矣. 又曰, 羅德憲今已賜諡, 李廓又將請諡, 自前如此之人, 不用年號, 或有已例, 分付該曹, 此兩人宣諡官教, 依此擧行,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있다. 정려문 탁본에는 '忠臣'으로 시작하여 나덕헌의 추증 관직, 최종 관직, 시호, '羅德憲之間'와 정려문을 세운 연도로 끝맺고 있다. 정려문을 세운 연도는 시호교지와 마찬가지로 청의 연호 대신에 '崇禎紀元後三辛丑'으로 기재되었다.



<그림 13> 1781년(정조 5) 羅德憲 旌閭門 拓本

이후 1789년(정조 13) 나덕헌에 대한 추증이 한 차례 더 시행되었다. 이 것은 정조가 시호를 받은 나덕헌을 正卿으로 贈職하라는 명을 따른 것이다. 74) 이에 따라 나덕헌은 가선대부·병조참판에서 자헌대부·병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다음해인 1790년(정조 14) 2월에 추증된 관직으로 기재된 시호교지가 다시 발급되었고, 3월 20일에 나주에서 자손이 시호교지를 받는 延諡를 거행하였다. 75) 이때 발급된 추증교지와 시호교지도 앞서 발급된 것과마찬가지로 청의 연호 대신에 '崇禎紀元後三己酉'와 '崇禎紀元後三庚戌'이기재되었다.

^{73)『}經國大典』「禮典」獎勸: 孝友·節義者, [如孝子·順孫·節婦·爲國亡身者子孫·睦族·救患之類.] 每歲抄, 本曹錄啓獎勸. [賞職或賞物, 尤異者, 旌門·復戶, 其妻守信者, 亦復戶.]"

^{74) 『}승정원일기』 1670책, 정조 13년(1789) 12월 25일(기사) : 有政. 吏批, ··· 贈參判羅德憲諡號 人, 正卿贈職事承傳.

^{75) 『}승정원일기』1674책, 정조 14년(1790) 3월 6일(병술): 徐邁修, 以吏曹言啓曰, 全羅道羅州居 幼學羅璧天來言, 其五代祖忠烈公德憲延諡, 今月二十日, 定行於羅州地云矣, 敢啓. 傳曰, 知道.



<그림 14> 1789년(정조 13) 羅德憲 追贈敎旨



<그림 15> 1790년(정조 14) 羅德憲 諡號敎旨

나덕헌의 추증교지와 시호교지는 국가적인 제도 속에서 나덕헌의 충절이 현양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절개를 굽히지 않은 공이 나덕헌의 사후에도 더욱 존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나덕헌의 충절은 尹行恁·洪敬謨·朴齊家 등의 글을 통해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76)

5. 맺유말

지금까지 나덕헌 고문서를 통해 나덕헌의 관직 활동과 사후에 현양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나덕헌은 선조 연간에 무과에 합격한 후에 선전관을 역임하였고, 광해군 연간에는 당상관에 올랐으며 지방의 수령과 군사지휘 관으로 활동하였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진무원 종1등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주로 평안도 지역의 지방 수령을 역임하였다. 명나라 장수의 接伴使로 활동하였고, 春信使·秋信使에 임명되어 심양에 몇 차례 다녀오는 사신으로 활동하였다. 삼도통어사에 임명되어 병자호란 이후에 통어영의 수군을 재건하고 철곶진을 설치하였으며, 청의 칙사를 지대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나덕헌의 관직 활동은 나덕헌의 임명 문서와 『통

⁷⁶⁾ 尹行恁 著,『碩齋稿』 권9,海東外史「羅德憲」;洪敬謨 著,『叢史』 8 型,「羅德憲傳」,朴齊家 著『貞蕤閣集』 권3,「李廓·羅德憲傳」

어영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중국 사신 시절에 이확과 함께 청 태종에게 하례를 끝까지 거부하였던 것은 나덕헌의 사후에 충절로 현양되었다. 나덕헌의 충절을 현양하는 과정 은 추증교지와 시호교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나덕헌의 관직 활동과 현양 과정을 통해 나덕헌 고문서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엿볼 수 있다.

끝으로 나덕헌 고문서의 활용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나덕헌 고문서에 대한 영인본의 출간이나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대중적인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어서 나덕헌 고문서의 번역과 역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어영록』의 경우에는 현전하는 3건의 통어영 등록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통어영록』에 대한 번역과 역주를 통해 17세기 통어사의 업무 및 문서 행정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덕헌 고문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술적인 연구는 나주 나주나씨 금호사 소장 고문서와 함께 연계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용방안을 통해 나덕헌 고문서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癸卯春別試榜』
- 『大典會通』
- 『東輿圖』
- 『碩齋稿』
- 『承政院日記』
- 『頤齋亂藁』
- 『頤齋遺藁』
- 『壯巖遺集』
- 『貞蕤閣集
- 『朝鮮王朝實錄』
- 『振武原從功臣錄券』
- 『忠烈公三到統禦營錄』
- 『叢史』
- 김만호, 「16~17세기 羅州羅氏 一門의 활동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 74, 호남사학회, 2019.
- 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贈諡 행정」, 『고문서연구』 23, 한국고문서 학회, 2003.
- 김학수, 「한범석(韓範錫:1672~1743) 교지(敎旨)의 역사적 가치」, 『남명학연구』 43,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4.
- 노인환, 「조선시대 密符의 제도와 운용」, 『군사』 155, 군사편찬연구소, 2020.
- 박기성,「『羅德憲傳』硏究」,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성호,「고문서로 복원한 雲巖 金緣의 생애」,『국학연구』37, 한국국학진흥원, 2018.
- 신해진 역, 『북행일기』, 보고사, 2020.
- 이군선,「洪敬謨『羅德憲傳』分析」,『동방한문학』45, 동방한문학회, 2010.
- 임선빈,「16세기 杏堂 尹復의 관직생활 -告身 활용을 위한 제언-」,『역사민속학』 54,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 조미은, 「정조대 무신 丁好南의 가계와 관직활동 -영성정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56, 한국고문서학회, 2020.

<부록> 羅州 羅州羅氏 羅德憲 古文書 전체 목록

번호	문서명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규격(cm)
1	教書	1637년(인조 15) 6월 7일	仁祖	羅德憲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 使·喬桐府使 羅德憲에게 부 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내용 으로 訓諭하는 使命訓諭教 書	81.0×97.0
2	諭書	1619년(광해군 11) 8월 18일	光海君	羅德憲	咸鏡北道防禦使 羅德憲에게 密符 제41부를 내리는 密符 諭書	55.5×115.2
3	諭書	1637년(인조 15) 6월 7일	仁祖	羅德憲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 使·喬桐府使 羅德憲에게 密 符 제37부를 내리는 密符諭 書	41.2×93.5
4	紅牌	1603년(선조 36) 1월	宣祖	羅德憲	羅德憲이 武科에 及第하고 받은 문서 武科 丙科 第987人	79.0×69.5
5	告身	1609년(광해군 1) 7월 15일	光海君	羅德憲	中直大夫 行扶安縣監에 임 명	45.2×46.5
6	告身	1612년(광해군 4) 10월 7일	光海君	羅德憲	禦侮將軍 行忠武衛副司直에 임명	55.0×61.8
7	告身	1619년(광해군 11) 1월 3일	光海君	羅德憲	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果에 임명	45.0×54.5
8	告身	1619년(광해군 11) 6월 11일	光海君	羅德憲	通政大夫에 임명 左傍書: 禿城中軍 別措軍器 監董効力之功 極爲可嘉 加 資事承傳	52.8×71.2
9	告身	1628년(인조 6) 10월 8일	仁祖	羅德憲	通政大夫 行安岳郡守에 임명	45.8×55.8
10	告身	1628년(인조 6) 10월 8일	仁祖	羅德憲	黃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임명	49.0×68.0
11	告身	1628년(인조 6) 10월	仁祖	羅德憲	黃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임명	45.9×54.8
12	告身	1633년(인조 11) 10월 1일	仁祖	羅德憲	折衝將軍 行龍驤衛副司猛에 임명	40.5×43.0
13	告身	1633년(인조 11) 12월 14일	仁祖	羅德憲	通政大夫 行定州牧使에 임 명	53.0×72.0

번호	문서명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규격(cm)
14	告身	1633년(인조 11) 12월 27일	仁祖	羅德憲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	47.0×61.5
15	告身	1634년(인조 12) 2월 18일	仁祖	羅德憲	折衝將軍 宣傳官에 임명	35.0×59.0
16	告身	1635년(인조 13) 1월 26일	仁祖	羅德憲	折衝將軍 行虎賁衛司果 兼 五衛將에 임명	55.5×68.8
17	告身	1635년(인조 14) 4월 4일	仁祖	羅德憲	折衝將軍 行龍驤衛副司猛에 임명	36.5×48.8
18	告身	1635년(인조 14) 4월 28일	仁祖	羅德憲	通政大夫 行昌城都護府使에 임명	53.2×69.0
19	告身	1635년(인조 14) 12월 16일	仁祖	羅德憲	通政大夫 守義州府尹에 임명	53.2×70.5
20	告身	1637년(인조 15) 5월 22일	仁祖	羅德憲	兼喬桐都護府使에 임명	44.3×55.1
21	告身	1635년(인조 14) 4월	吏曹	羅守素	務功郞에 임명 左傍書 : 父行司猛羅德憲副 護軍時丙六丁十別代加幷超	48.5×57.5
22	告身	1635년(인조 14) 4월	吏曹	羅守素	宣教郎에 임명 左傍書 : 父行司猛羅德憲庚 七壬五別代加幷超 背面: 吳癸生	39.0×54.0
23	追贈教 旨	1684년(숙종 10) 9월 22일	肅宗	羅德憲	嘉善大夫·兵曹参判·兼同知義 禁府事에 추증 左傍書: 以一介行李 身入虜 庭 臨大節而不屈 特爲贈職 事 判下	62.0×84.7
24	追贈教旨	1684년(숙종 10) 11월 26일	肅宗	羅德憲 妻 全義 李氏	貞夫人에 추증 左傍書: 贈嘉善大夫·兵曹參 判·兼同知義禁府事羅德憲妻 依大典從夫職	66.0×90.3
25	追贈教 旨	1789년(정조 13) 12월 25일	正祖	羅德憲	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 府訓錬院事에 추증 左傍書: 諡號人 正卿贈職事 承傳	71.5×96.7
26	諡號教 旨	1781년(정조 5) 10월	正祖	羅德憲	忠烈의 諡號를 내림 諡註: 事君盡節曰忠 剛克爲 伐曰烈	59.0×114.0
27	諡號教 旨	1790년(정조 14) 2월	正祖	羅德憲	忠烈의 諡號를 내림 諡註 : 事君盡節曰忠剛克爲 伐曰烈	57.8×89.0

번호	문서명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규격(cm)
28	有旨	1619년(광해군 11) 11월 22일	趙纉韓	羅德憲	변방의 방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光海君의 명령을 승 정원에서 咸鏡北道防禦使 羅德憲에게 전달하는 有旨	51.8×70.0
29	賜給	1634년(인조 12) 9월 7일	仁祖	羅德憲	秋信使 羅德憲에게 豹皮·臘 藥·胡椒·丹木·弓子·長箭·片 箭·筒兒를 賜給	47.9×57.0
30	立案	1867년(고종 4) 11월	務安縣	羅壽華等 4人	務安縣에서 羅壽華 等 4人에게 7代祖 忠烈公 羅德憲 墓所의 四山을 옛 경계에 따라 立案을 成出하고 墓直 1 戶의 煙戶雜役을 면제	52.5×30.0
31	試券	1673년(현종 14) 2월 19일	羅禕		生員試 覆試에서 製述한 試券 試題 : 易義 萬物睽而其事 [類] 字號:三『 科次:三下 籤紙:生員試第一等三人 상태:封彌,割去,祕封 & 음	73.5×203.5
32	試券				生員試 試券 試題: 詩義 職思其居 字號: 十木 科次: 次下 等第: 三之十一 상태: 封彌, 割去, 祕封 없 음	73.0×196.5
33		1637~1639년 (인조 15~17)	羅德憲		三道統禦使 羅德憲이 仁祖 에게 올린 啓本·狀啓, 備邊 司·兵曹·京畿觀察使와 주고 받은 關·牒呈 등을 수록한 謄錄	
34	御製詩	1799년(정조 23)	正祖	羅德憲 後孫	正祖가 羅德憲 後孫에게 내 린 御製詩 題目: 謹題敬奉閣	39.0×165.5
35	御製詩 皮封	1799년(정조 23)	正祖	羅德憲 後孫	正祖가 羅德憲 後孫에게 내 린 御製詩의 皮封	47.0×61.0
36	拓本	1781년(정조 5)			羅德憲 旌閭 拓本	49.5×143.0

мемо

M E M O

мемо

나주 남평주조장 소장자료의 가치와 활용방안

고정서(신안군청)

나주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의 가치와 활용방안

고정서*

- 목 차 -

- 1. 서론
- 2. 남평주조장 역사
- 3.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 현황과 특성
- 4.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의 활용방안
- 5. 결론

1.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 '주세령(酒稅令)'¹⁾의 공포로 상업적인 공간에서 술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즉,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전승되어 오던 술이 양조장(釀造場)이라 부르는 공간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령으로 인해 술이 주요 과세의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술의 전통성, 역사성, 다양성 등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강한 규제와 단속으로 전통 방식의 주조(酒造)하는 전승이 중단되었고 그 역할을 '양조장'이 대체하게 되었다.²⁾

양조장의 등장은 우리나라 술 문화 양상이 변화하는 중요한 지점이어서 근·현대 생활문화에 관한 연구와 술 문화 연구에 중요한 대상이 된다. 그 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말할 때 양조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 신안군청

¹⁾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16년 7월 25일 제정, 1916년 9월 1일 시행.

²⁾ 김승유·변윤희·박록담, 「우리 술 문화의 발표 공간 양조장」, 『양조장과 술문화 조사보고서』 1, 국립민속박물관, 2019, p.13.

않을뿐더러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술을 보존하거나 전승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거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재는 겨우 명목만 유지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양조장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에서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양조장에 대한 연구는 건축학적 측면이나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술에 대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많이 다뤄졌다. 그러나 양조장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근·현대시기 변화했던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추적해 보거나, 양조장이 당시 지역사회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양조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권력구조를 형성해 나아가는지, 지역민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등 지역의 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양조장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정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발표에서는 나주 남평주조장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그 자료의 가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남평주조장의 역사와 남평주조장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양조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술, 식초, 간장 등 발효 식품을 생산하는 곳을 총칭한다. 즉, 주류제조업뿐만 아니라 발효식품공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주조'는 오직 주류제조업에만 사용한 것이었는데 실제 일제강점기에 주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주조장'이라는 명칭을 양조장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도 양조업의 상호로 '주조'가 상당히 많았다. 당시 양조업자들의 공식적인 단체명도 '조선주조

협회'인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일제강점기에는 주조장이 '술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해방 이후 '양조업'과 '간장, 된장 제조업'이 분명히 구분되면서 양조업에 다른 발효식품업을 포함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양조'가 곧 주류 제조를 뜻하는 사회적 용어로 정착하였다.³⁾ 그 때문에 현재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조장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나, 본 발표에서는 수집한 자료가 '남평주조장'에서 생산되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양조'가 아닌 '주조'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본 발표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 현황의 경우 1차 조사 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므로 추후 자료가 추가되면 보완할 수 있음을 밝힌다. 발표자 또한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의 추가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의 활용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발표에 임했음을 밝힌다.

2. 남평주조장 역사

남평주조장은 1932년 5월 15일 남평주조주식회사(南坪酒造株式會社, 이하 남평주조)로 설립되었다. 4) 남평주조(주)는 조선 탁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자 장박훈일랑(長迫訓一郞), 5) 이사 곡우(谷虞), 6) 엽방오(葉方悟), 옥정장마(玉井長馬), 옥정효의(玉井孝義), 김용호(金龍浩), 백목오평(白木五平) 등이 운영하였다. 7) 그러나 1938년 5월 31일에 남평주

³⁾ 위의 보고서, pp.16-17.

⁴⁾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남평주조장 건물 등기 접수는 1932년(소화 7) 10월 6일이므로 1932년 전후로 남평주조장 건물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등기부에 등록된 건물의 구조는 木造瓦鍼葺平家事務室 1동(건평 24평)과 木造瓦鍼葺平家倉庫 1동(건평 18평)이다.

⁵⁾ 光州麴子製造(株)와 光山酒造(株)의 이사직 겸함.

⁶⁾ 광주군 서방면 탁주 주조장 운영.

⁷⁾ 南平酒造(株): 자본금 10,000원, 불입금 2,500원, 목적 조선 탁주 제조 및 판매, 업종 양조업, 설립일 1932년 5월 15일, 본점주소 전라남도 나주군 남평면 남평리 164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 組合要錄』, 1933년판, 東亞經濟時報社)

<남평주조장 역대 대표>

1대 : 장박훈일랑(長迫訓一郞)			
1대 : 박○○(朴○○)9)			
2대 : 박창환(朴昌煥, 1899년	년생)		
3대 : 박재기(朴在璂, 1922년	년생)		
4대 : 박순호(朴純鎬, 1949년생)			
5대 : 이광열(1968년생)			
6대 : 조○○10)			
7대 : 윤태석(1966년생)			

光州地方法院羅州出張所

^{8)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7월 21일 3453호 7면

⁻ 南坪酒造株式會社(解散): 昭和拾參年五月參拾壹日 株主總會의 決議에 의해 解散

⁻ 南坪酒造株式會社(淸算人 選任): 淸算人의 氏名住所

① 長迫訓一郎, 光州府 南町 拾番地

② 玉井孝義, 羅州郡 山浦面 嶝亭里 二百八十四番地

[:] 右 昭和拾參年六月拾日 登記

⁹⁾ 윤태석 소장자에 따르면, 박창환의 부친 박○○가 1대 사장을 역임했다고 언급하였다(2018년 9월 9일 조사 당시 면담 내용).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¹⁰⁾ 이광렬의 증언에 따르면 2014~2015년에 남평주조장 토지소유권을 조재국에게 이전한 바 있고, 이후 건물과 토지를 윤태석 소장자에게 이전했다고 언급하였다(2019년 7월 19일 증언 내용).

토지대장에 의하면 남평주조(주) 건물이 있던 전라남도 나주군 남평면 남평리 164의 토지는 1932년 6월 20일 남평주조(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38년 1월 22일에 박창환(朴昌煥)에게 이전되었다. 1938년 이후부터 남평주조(주)는 박창환 개인 명의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는 명의 이전전인 1937년에 이미 탁주(濁酒) 면허를 신청하여 취득하였고 면허가 허가된 이후에 남평주조(주)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주조장을 운영한 것이다. 또한 그는 1951년에 약주(藥酒) 면허를 취득하였고, 1955년에는 주류제조업(소주) 면허를 발급받으면서 1956년 2월 24일에 '양로양조장(養老釀造場)'이라는 상호명을 등록하여 유영하였다.

'양로양조장'은 1961년 박창환의 아들 박재기(朴在璂)가 인수하여 운영하였고,11) 1987년에 박재기가 그의 아들 박순호(朴純鎬)에게 증여하였다.12) 박순호는 1988년에 '양로양조장'을 '남평주조장(南坪酒造場)'으로 바꾸어개업하였다.

이후 '남평주조장'은 상호명이 바뀐 후 계속 영업해오다가 2000년 초반 이광열로 대표자가 바뀌었고,¹³⁾ 2015년 10월에 윤태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3.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성

1) 남평주조장 자료의 소장 경위

남평주조장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어 3대에 걸쳐 가업으로 운영되었고 주조장 직원이 건물을 인수하면서 막걸리 주조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전통의 맛과 기술을 지켜온 곳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대량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판로의 한계와 막걸리 소비층의 감소로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결국

^{11) 1981}년 1월 20일에 양로양조장 토지소유권이 박재기에게 이전됨.

^{12) 1987}년 6월 19일에 양로양조장 토지소유권이 박순호에게 이전됨.

^{13) 2018}년 8월 7일에 발급된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64번지 1 층 목조 공장의 소유권은 2006년 9월 1일 자로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2번지의 이광열에게 있다고 기재됨.

2015년 생산 중단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라져가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안타깝게 생각한 7대 윤태석 대표와 5대 이광열 대표가 뜻을 합하여 윤태석이 주조장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 내의 일체 기록물 자료와 생활 유물 등을 수집하여 소장하게 되었다. 이는 남평에서 태어나 남평주조장에서 주조한 막걸리를 마시며 지역에서 성장한 유년 시절의 기억과 경험이 생생한 윤태석 대표의 강렬한 바람이자료 수집을 막차고 나가게 한 것이다.

수집한 남평주조장 자료는 주조장 근처에 위치한 파평윤씨이조참의공종 회 건물 내부로 옮겨 보관하였고 일부는 윤태석 대표의 본가에 소장하였다. 그는 수집한 자료 가운데 주요 기록물 자료를 대상으로 개별 파일링 작업을 하여 파일첩에 보관하거나 도서 자료의 경우, 건별로 투명 비닐 포장지에 보관하는 등 최소한의 분류 및 정리를 해 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일부 사진과 필름 자료의 경우 스캔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소장하고 있었다.

2018년 현지 조사 시 살펴본 소장 자료의 보존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 대체로 양호한 것 같지만 근·현대기록물 가운데 특히 지류로 생산된 문헌 자료의 경우 온·습도나 빛에 매우 취약하여 자료의 보존 관리가 시급한 편이었다.

남평주조장 건물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제27호로 지정되었지만 몇 번의 자연재해로 외관이 훼손되어 수리 및 복원이 시급해 보였다. 또한 건물 안 에 일부 주조와 관련된 생산 도구 및 생활 유물들이 건물 안에 그대로 보 존되어 있어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2)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성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는 현지 조사 시 자료의 중요성가 기초 자료 목록 작성이 시급하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으로 이관해서 정리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7대 대표 윤태석이 2015년 10월에 남평주조장을 인수하는 과정에

서 함께 수집한 것으로 수집 자료는 크게 남평주조장과 직접 관련된 것과 남평주조장 대표였던 박창환, 박재기, 박순호 등의 개인적인 것으로 나누어 진다. 수집한 자료의 정리는 남평주조장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였다. 이 중 유물의 경우 1차 조사 시에 포함된 것만 정리하였고, 윤태석 소장자가 다른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자료에는 남평주조장의 운영, 인사 채용, 주류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도면 및 지도, 주조 관련 도서 및 필기 노트, 차용증서, 토지 및 건물 관련 서류, 소송 및 사건 관련 서류, 사진 및 필름 등 남평주조장과 관련된 개인적인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 중에는 나주군 왕곡면에 위치한 양산주조장(장산주조장)과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세법에 의하면 지역 주조장은 생산 지역에서만 주류를 제조,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특이하다 하겠다.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양산주조장(장산주조장)의 경우 대표자가 남평주조장 4대 대표인 박재기의동생 박재관(朴在冠)이었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박재기이기 때문에 남평주조장 자료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자료 또한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목록으로 포함하였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총 1,287종 2,316점이다. 자료의 시기는 근·현대이며, 5개의 대분류로 분류하였다. ①도면/지도류: 22종 22점, ②도서류: 37종 38점, ③문서류: 1,093종 1,678점, ④사진/필름류: 97종 529점, ⑤신문/잡지류: 3종 3점, ⑥유물류: 35종 46점이다.

이 6개의 대분류로 분류한 자료는 내용의 특성상 다시 21개의 중분류로 분류하였으며 종수(점수)는 다음과 같다.

<남평주조장 소장자료 현황>

※종수(점수)

대분류 중분류	도면/지도	도서	문서	사진/필름	신문/잡지	유물
주조		35(36)	27(33)			
인사/채용			190(286)			
판매/유통			18(22)			
운영			188(275)			9(9)
토지/건물			197(330)		2(2)	
거래/차용			17(30)			
임대/임차			8(8)			
소송/조사			45(86)			
생활/개인			133(288)			1(1)
재산/개인			4(16)			
공과금/세금			102(118)			
도면	8(8)					
지도	14(14)					
편지			122(126)			1(2)
사진				61(491)		
필름				36(38)		
예술			1(2)			
지역		2(2)	11(20)			
홍보			29(37)		1(1)	20(21)
혼인			1(1)			
화폐						4(13)
합계	22(22)	37(38)	1,093(1,678)	97(529)	3(3)	35(46)

- ① 도면/지도류는 1960~1970년대 지적도, 약도, 관내도, 양산주조장(장산주조장) 도면 등으로 남평주조장을 운영했던 박창환, 박재기와 관련된 자료이다. 양산주조장(장산주조장)의 경우 대표는 박재기의 동생 박재관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박재기이기 때문에 함께 분류하였다.
- ② 도서류는 1950~1980년대 주조(酒造) 관련 도서 자료이다. 남평주조장 3대 대표인 박재기와 4대 대표인 박순호가 탁·약주(濁·藥酒) 관련 제조방

- 법, 대체원료(代替原料) 기술 등을 연구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이다. 현재의 도서 분류로 보자면 조건에 맞지 않으나 시대를 참고하여 일차적으로는 도 서로 분류하였다.
- ③ 문서류는 남평주조장 소장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평주조장과 직접 관련된 것은 박창환의 탁주와 약주 면허 발급 문서, '양로양조장' 상표 등록 문서, 원료, 주조 도구 구입 영수증, 비품대장 등운영 관련 자료와 주조장에서 근무할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서약서와 같은 채용과 관련된 자료, 주조장에서 생산한 주류의 유통 및 판매 관련 자료 등이다. 이밖에 차용증서, 어음, 각종 공과금과 세금납부 영수증, 증명서, 소송 관련 서류, 토지 및 건물 관련 자료, 홍보 관련 자료, 편지 등의자료가 있다. ④ 사진/필름류는 크게 앨범, 인화 사진(낱장), 현상 필름 묶음으로 나누었다. 두 권의 앨범은 3대 사장인 박재기가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박재기의 가족사진과 학창시절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재기가 중학생 때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간 사진이나 일본에서 유학했던시절의 사진이 다수를 차지한다. 인화 사진은 박재기 내외, 박원호, 박순호등 남평주조장의 역대 대표의 인물 사진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현상필름은 당시 생활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조장과 남평 시장의 모습을 촬영한 것도 있다.
- ⑤ 신문/잡지류는 박창환, 박재기, 박순호가 거주하던 광주광역시 계림동 개발에 대한 소식지와 탁주 주조 기계에 대한 홍보물 자료이다. 주조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주조장을 운영했던 대표들의 생활상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자료여서 자료 정리에 포함하였다.
- ⑥ 유물류에서 유물은 남평주조장과 관련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종류는 밀가루 포대, 동전을 보관하는 자루, 화폐(지폐)와 지갑, 포장지 및 종이가방 등이다. 특히 밀가루 포대의 경우 탁주 주조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사용한 이야기와 일치되며, 미국에서 원조받은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4.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의 가치와 활용방안

1) 나주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의 가치

남평주조장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건물이 세워진 이후 현재까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다. 이와 함께 주조장의 역사와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기록물 자료를 비롯하여 제조 과정에 필요한 도구, 주조 공간에 머물며 생활한 사람들의 생활유물 등이 남아있다. 따라서 남평주조장과 이와 관련된 소장자료는 남평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지역 생활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는 근·현대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와 활용 가치가 있다. 근·현대 자료의 경우 현재와의 시간적 거리가 가깝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근·현대에 생산된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무관심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남평주조장 소장자료는 건물과 함께 주조장 운영과 관련된 역사 기록물 자료들이 일괄 남아있어 근·현대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와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남평주조장이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기록물 자료를 통해 주조장의 건립과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고 일제강점기 이후 남평 지역뿐만 아니라 나주지역의 상업 및 경제 분야 중 주류업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다.

둘째, 남평주조장 막걸리 주조 기술과 주조 방식에 대한 의미와 활용 가치이다.

남평주조장은 박창환과 아들 박재기, 손자 박순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막걸리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그리고 이후 박순호 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이광열이 주조 기술을 그대로 익혀 최근까지 막걸리를 주조하였다. 따라서 남평주조장의 막걸리 주조 기술과 방식은 전통 방식 그대로 전수되어 이어져 왔고, 또한 이광열 사장은 전수받은 전통 방식과 더불어 시대에

따라 밀가루와 쌀 등의 막걸리 주재료의 배합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주조 기술과 방식을 발전시켰다. 이렇듯 남평주조장 내부에는 최근까지 막걸리를 주조하던 과정별 공간과 주조할 때 사용되었던 도구들이함께 남아 있기 때문에 주조장에서 전승되던 주조 행위와 주조에 관한 식의 복원 및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평지역의 주류제조와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자료적 가치가 높다.

19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주세령에 따라 우리의 전통가양주도 제조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세를 부과하였다. 당시 주세령에서는 '조 선주'를 "조선의 재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탁주·약주 및 소주를 말한다" 고 규정하였다. 주류는 양조주, 증류주, 재제주로 3종으로 구분하였다. 양 조주는 청주·탁주·약주·맥주류로써 기타 발효액으로 제조하 술을 말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각지에 주조장이 들어서는데, 남평주조장도 1932년에 설립되었다가 1938년 박창화이 인수하여 개인 운영하였다. 광복 뒤 1949 년 10월 21일 주세법14)이 시행되면서 일제강점기의 주세령은 폐지되었지 만, 부칙에 의해 기존의 주류제조 면허는 유지되었고 주류 판매업도 정부 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였다.15)이 조항에 따라 남평주조장에서 주류판매 도 함께 하였다. 또한 주류제조의 기본이 되는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 는 종국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다만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 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16) 이 규정에 따라 남평주조장에서도 주류제조와 함께 그 원료용으로 주모, 주 료, 국자, 입국, 종국 등의 제조, 그리고 판매까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도 구와 자료가 시기별로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가치가 높다 하겠다.

¹⁴⁾ 법률 제60호, 1949년 10월 21일 제정.

¹⁵⁾ 주세법 제8조

¹⁶⁾ 주세법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또한 1990년대 주류 판매에 지역제한이 폐지되기 전까지 나주 각 읍면 마다 1~2개 정도 주조장이 있었다. 각 지역마다 있는 주조장은 술을 생산하여 배달원을 통해 그 지역 내 마을의 점방이나 음식점 등에 공급하거나마을 잔치나 집안 행사 때 손님이 찾아와 대량 주문하는 술 도매점 역할을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매점 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어 당시 주류 유통업관련 자료로서 의미도 상당하다 하겠다.

넷째, 근대 건축물로서 공간의 복원과 활용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이다. 남평주조장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주조장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잘간직하고 있다. 최근까지 주조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조장건물로서의 특성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술을 빚기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써 과학적으로 설계된 공간이기도 한다. 그런데 윤태석 대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남평주조장 건물에서 주조하지않게 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빠른 속도로 건물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남평주조장이 갖는 건축학적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원형 그대로의모습을 제대로 복원하여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의복원도 단순 복원에 그치지 않고 남평 지역의 공간으로까지 확대하여 역사·문화적인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평주조장 운영의 생활사적 가치이다. 남평주조장은 일제강점기부터 주세법과 주세령 등 국가의 체제 하에 남평이라는 한정적 지역내에서만 술을 판매, 유통을 독점해왔다. 이는 일정한 수입이 유지될 수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되지만 반대로 지역민들이 술을 구입하지 않으면유지할 수 없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남평주조장의 경우 바로 인근에위치한 남평오일장과 남평지역 내 각 마을의 점방이나 가게와 위탁판매 계약을 통해 술 판매를 했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서가 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쌀 등과 같은 술의 원료의 구매 가격을 통해 당시 곡류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주조장 직원 채용과 관련된 자료도 상당히 남아 있어 남평주조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느 범위까지

82

이르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남평 지역의 생활문화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나주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의 활용방안

지금까지 나주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남평주조장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를 통해 주조장의 건립과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고일제강점기 이후 남평 지역 상업 및 경제 분야 중 주류업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3 대에 걸친 가업으로 주조장을 운영하면서 당시 남평 지역의 근·현대 생활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문화유산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근·현대 자료의 경우 시간의 범위가 짧아 조사 및 정리하는 것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된 고문서보다 빠르게 훼손되고 멸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현대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원활한 소통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기관 또는지역 소재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근·현대 기록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환경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의 멸실을 최소화하고, 조사·수집 및 연구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현대 기록물과 생활 자료에 대한 분류 및 정리방식에 대한 표준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 이는 남평주조장 소장자료와 같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여 민-관-학계 등이 협력하여 표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남평주조장 소장자료의 목록화 작업은 근·현대 기록물 및 생활 자료의분류 및 정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목록화를 바탕으로 근·현대 기록물 및 생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여 자료를 정보화하고, 학계와 일반으로 확대하여 자료집·연구서 간행 및학술대회 등 남평 지역사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주학 연구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 남평주조장 관련 전시를 기획하거나 교육 및 생활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대중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평주조장 건물의 제대로 된 공간 복원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남평주조장의 경우 막걸리 소비량은 나주지역 내에서 영산포에 있는 주조장 다음으로 으뜸이었다. 이는 인근에 남평오일 장과 연관성이 깊다. 남평오일장은 예로부터 우시장이 섰을 만큼 나주지역 내에서 큰 장이었다. 따라서 오일장 부근에 위치한 남평주조장에서 제조한 막걸리 소비는 장날이 되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판매가 되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남평오일장과 남평주조장은 상생 관계였으며 막걸리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문화, 생활상 등 근·현대 남평지역의 역사를 함께 일궈 온 역사문 화자원이다. 이러한 상호 관계를 감안한다면 남평주조장 건물의 복원은 단 순히 복원에 그치지 않고 남평오일장 공간으로까지 확대하여 역사·문화적 인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평주조장 건물 자체는 원형 그대로 복 원하되 주변 공간은 리모델링하고 건물과 건물은 역사 문화의 거리로 연결 하여 남평의 역사 공간을 재탄생 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후속 세대에게 안정적으로 계승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조장 사람들이 어떻 게 살았는가를 살피면서 막걸리 주조 방식과 과정, 막걸리에 담긴 전통지 식과 기술 등을 새롭게 조명, 근·현대 남평을 대표하는 주조장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막걸리는 발효 음식 가 운데 하나로 발효의 효능과 과학적 기술 등 교육 프로그램 및 전통 막걸리 주조와 판매·배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 술에 대한 이해와 그 이면에 깔린 지역민들의 생활 문화를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평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나아가 남평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남평주조장 소장자료가 가지고 있는 근·현대 기록문화유산의 의미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의 문화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조장의 공간을 통해 다양한 체험이나 놀이, 전시등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남평주조장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 지역민의 참여를 빼서는 안 된다.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가 아무리 훌륭하고, 남평주조장의 공간 활용을 최대치 높이더라도 주조장이 위치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빠져 있다면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평주조장을 통해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조장이 있는 남평의 역사와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기록화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콘텐츠 내용을 더 풍성해지고 생생해 질 것이다. 즉 남평주조장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민이함께 참여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남평주조장은 남평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시대적으로 연계하는 중요한 거점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현재는 작업이 중단되었지만 막걸리 제조 기술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지역의 생활문화 구역의 한 부분으로써 역사적 상징성도 있다. 즉 근대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남평주조장을 활용함으로써 근대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남평의 지역적 역사성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는 중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남평주조장 소장 자료는 근·현대 나주와 남평 지역의 역사, 생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

다. 여기에 남평주조장이라는 공간을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장(場)으로 만 등과 동시에 지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서 지역민이 그저 보조적 참여가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주시에서는 각 읍·면의 자체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SNS,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나주'라는 하나의 지역을 보고 오지만 실제 그들이 보고 느끼고 참여하는 것은 나주가 아닌 나주에 속해 있는 개별의 문화와 콘텐츠인 것이다. 나주시는 각 읍·면과 함께 그 지역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을 개발하고 그들이 직접 그 콘텐츠를 유지하고 계속 업그래이드를 할 수 있도록지원해야 한다.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원으로써의 자료가 풍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지역을 기록화 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남평주조장은 이 지역의 기록화 작업을 하는 첫 주자가 될 수 있다. 남평주조장을 지역을 대표하는 아카이빙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은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승유·변윤희·박록담, 「우리 술 문화의 발표 공간 양조장」, 『양조장과 술문화 조사보고서』 1·2, 국립민속박물관, 2019
- 문화재청·충남대학교 건축학과, 『덕산양조장 기록화조사보고서』, 혜원인쇄, 2004.
- 신유림, 「증평군 기록관은 증평을 닮았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한국기록 학학회, 2019.
- 윤태석, 「나주 1932, 남평주조장 박물관화 연구」, 제42회 박물관학 학술대회 『뮤지엄, 지역공동체와 유산 해석』, 한국박물관학회, 2019.
- 이희숙,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빙 모형 설계와 적용 -성북구를 적용사례로-』,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조미은·고정서·박선미·김희태, 『나주 남평주조장 소장자료 학술조사』, 나주시·(재)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 최유정, 「막걸리 양조장의 기능과 문화유산 가치 -칠곡양조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물관학보』 34권, 한국박물관학회, 2018.
- 최정은, 「지방역사기록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증평기록관(https://larchiveum.net/repeople/con10013/)

2020년 기초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및 나주지역 기록유산 자료 기탁식

나주지역 민간소장 기록유산의 가치와 보존방안

발행일 2020년 10월 21일

발행처 🕝 짧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062-603-9625

Fax. 062-941-6705

https://www.hiks.or.kr

※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20 호남한국학 진흥지원 사업 (기초자료 조사수집)"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며, 여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